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2019.5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2019. 5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년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1. 특례제도 운영 현황

### 가. 특례제도 개요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해 평가
  - 두 제도가 관세를 감면해준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제도임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교육·학술 및 문화를 진흥시키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함으로써 실험·실습 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정책대상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임
  - 감면 대상 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8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46억원임

<표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망)	2019 (전망)
관세	303	278	200	208	213	204	170	146	193	19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에 한하여 조세지원을 해줌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2012년 이후 정책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되었으며, 2014년 이후 중견기업이 포함됨
  -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5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61억원임

〈표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망)	2019 (전망)
관세	802	284	21	27	30	38	41	61	90	9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나. 전체 관세 감면 제도

- 관세 감면은 국제 관례에 의해 혹은 관세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국제 관례에 의한 관세 감면에는 외교관 면세, 상용건품, 수출물품의 용기 재수입, 그리고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이 있음
    - 이 밖에 동식물 번식, 박람회 물품, 국제올림픽 등의 운동기구, 방사능 복구 지원 기증 물품 등이 있음
  -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에는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 감세 등이 있음
  - 이 밖에 외부경제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이 있음
    -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용품, 정부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등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은 외부효과 교정 목적의 관세 감면
- 반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음

#### 다. 특례제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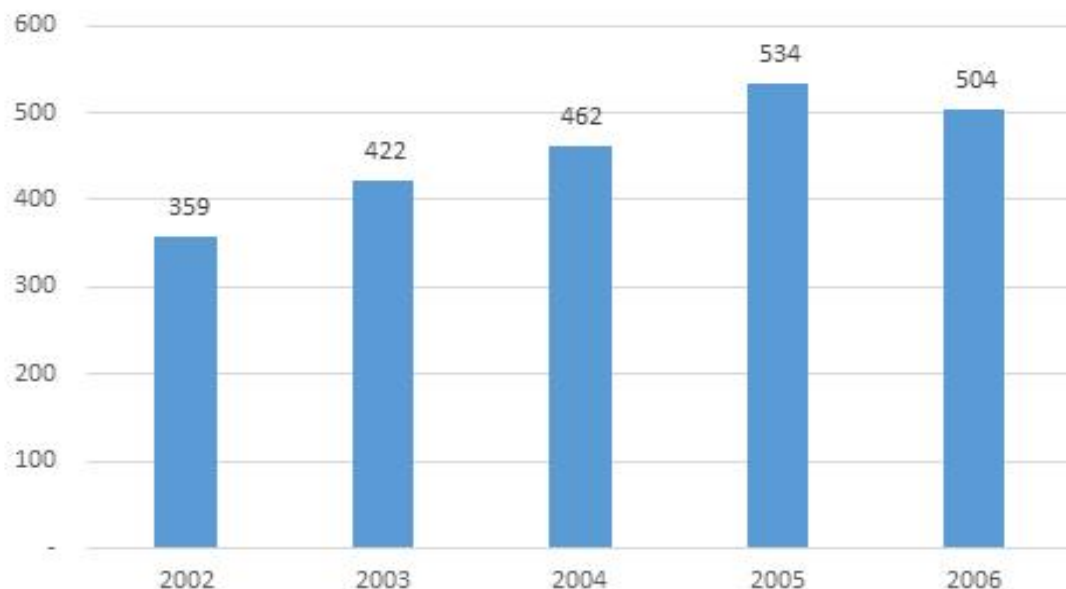
#####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 가) 관세 감면 규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02년 약 359억원에서 2017년 약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관세 감면액은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약 500억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약 200억원 내외로 감소하였음

[그림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1~2017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입액은 전체 교역 수입액 대비 약 0.06% 수준
- 2017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수입 총액은 약 2,826억원이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교역 수입액은 약 478조원

<표 3>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교역 수입액	감면 혜택 물품의 수입액	비중
2011	524,860,515	447,764	0.09
2012	543,208,878	327,166	0.06
2013	499,524,002	360,775	0.07
2014	489,593,358	371,107	0.08
2015	433,642,759	332,927	0.08
2016	415,657,144	283,723	0.07
2017	478,183,643	282,604	0.06

주: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대상 품목들의 전체 과세가격 수치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나) 관세 감면 품목별 분석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HS 10자리 기준 총 951개임
  - 이들 물품의 관세 감면액은 약 146억원
  - 감면 혜택 물품 수는 2011년 863개에서 2017년 951개로 증가하였으나, 관세 감면액은 2011년 약 268억원에서 2017년 약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4>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감면 받은 물품 수	관세 감면액
2011	863	26,803
2012	933	18,275
2013	990	20,089
2014	984	21,550
2015	991	20,274
2016	972	16,975
2017	951	14,568

주: 감면 혜택 물품 수는 HS 10자리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의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만원 정도임
  - 관세 감면을 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임
  - 연차적으로 과세가격(수입가격)이 저렴한 것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세 감면액도 2011년 약 3천만원에서 2017년 약 1,500만원 정도로 감소

<표 5>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연도	과세가격	관세 감면액
2011	518,846	31,058
2012	350,660	19,588
2013	364,419	20,292
2014	377,141	21,900
2015	335,950	20,458
2016	291,896	17,464
2017	297,165	15,319

주: 물품당 과세가격, 관세액, 관세 감면액은 HS10 자리 기준 물품 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는 거의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에는 기계류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연구개발용 물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연간 최소 20건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11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들 품목군이 전체 감면 대상 물품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무기화합물(HS 28), 유기화합물(HS 29), 화학공업생산물(HS 38), 플라스틱류(HS 39), 고무류(HS 40), 유리(HS 70), 철강(HS 73),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정밀기기(HS 90) 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8	40	36	41	31	35	32	32
29	23	37	60	39	33	45	39
38	22	28	25	21	17	23	21
39	50	49	60	64	60	60	60
40	13	15	22	26	25	32	22
70	29	26	25	26	25	21	21
73	27	24	28	27	30	30	27
84	171	190	180	191	180	184	181
85	175	192	226	226	259	236	236
87	37	42	40	38	38	38	44
90	112	124	113	108	95	104	104
합계	699	763	820	797	797	805	787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17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음
  - 이 중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등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임
  - 이 밖에 안료(HS 32)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백만원)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0	80	89	98	130	82	0	3
32	655	827	1,029	1,260	569	596	827
35	3	21	17	14	91	88	138
37	136	250	199	89	123	113	67
38	276	303	251	140	314	216	239
39	141	148	141	118	155	120	147
40	131	73	49	53	253	141	127
70	125	115	190	776	226	295	198
71	32	135	77	53	36	4	23
73	92	27	35	92	100	165	132
74	25	98	136	18	10	7	4
83	8	21	26	27	27	46	118
84	6,242	4,705	5,209	4,704	2,771	3,225	3,130
85	2,798	2,130	2,117	2,853	4,322	2,858	1,711
87	4,201	1,988	2,054	3,082	3,689	3,230	3,804
90	11,514	7,019	8,058	7,587	6,591	5,394	3,621
94	32	13	101	119	703	225	75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 대상인 연구개발용 물품은 해당 물품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이후 7년간 몇 개의 품목만이 수입되었다거나 그 물품의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매우 소액인 경우도 다수 있음
  -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함
  -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수의 국가(지역)들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FTA를 통해 관세 부담이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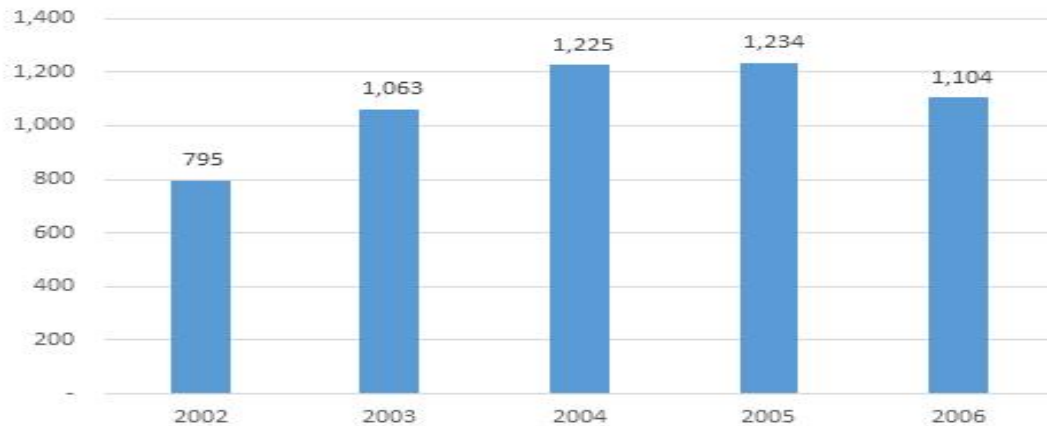
## 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 가) 관세 감면 규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02년 약 795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61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12년부터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폐지하면서 관세 감면액이 크게 감소함

[그림 3]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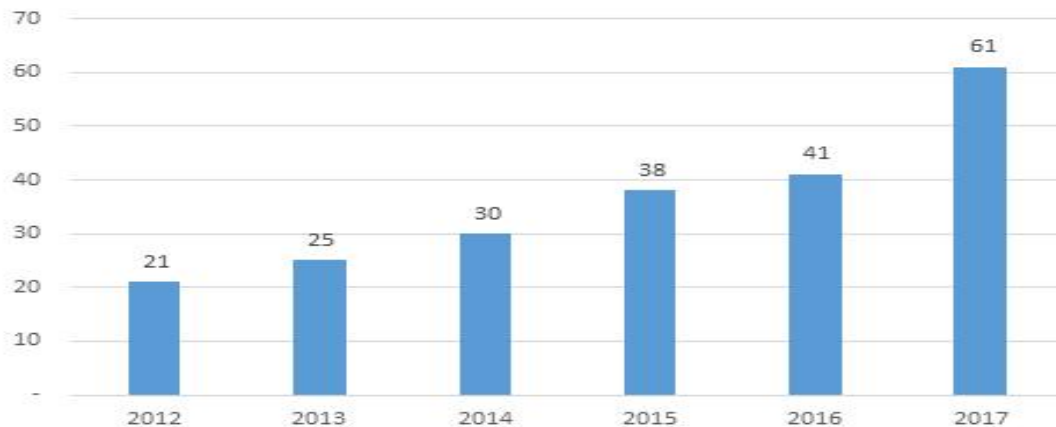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2~2017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공장자동화용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입액은 전체 교역 수입액 대비 약 2.8% 수준

○ 2017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수입 총액은 약 1,627억원이며,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중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교역 수입액은 약 5.8조원

<표 8>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교역 수입액	감면 혜택 물품의 수입액	비중
2012	6,283,366	100,861	1.6
2013	6,465,571	95,270	1.5
2014	5,768,618	99,663	1.7
2015	2,769,349	97,388	3.5
2016	2,572,419	105,788	4.1
2017	5,819,810	162,669	2.8
합계	29,679,134	661,638	2.2

주: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대상 품목들의 전체 과세가격 수치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관세 감면 품목별 분석

□ 2017년 공장자동화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HS 10자리 기준 총 219 개이며, 이들 물품의 관세 감면액은 약 61억원

<표 9>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감면 받은 물품 수	관세 감면액
2012	259	2,148
2013	197	2,532
2014	207	3,009
2015	182	3,821
2016	139	4,126
2017	219	6,110

주: 감면 혜택 물품 수는 HS 10자리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장자동화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고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800만원 정도임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4억원 수준임
  -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된 2015년 이전에는 물품당 관세 감면액이 약 1,3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어섰음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을 보면 중견기업이 포함됨으로 인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상계관세로 연결될 수 있어서 대기업을 제외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0> 공장자동화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연도	과세가격	관세 감면액
2012	389,424	8,295
2013	483,604	12,853
2014	481,464	14,539
2015	535,096	20,993
2016	761,062	29,682
2017	742,779	27,898

주: 물품당 과세가격, 관세액, 관세 감면액은 HS10 자리 기준 물품 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은 대부분 HS 84류의 기계류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고, 이 밖에 HS 85류와 HS 90류에 속한 품목이 있음
  - HS 84류의 기계류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 전체의 약 95% 정도를 차지
  - HS 85류의 전자기기 등과 HS 90류의 정밀기기 등의 일부 품목들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받고 수입되고 있음

〈표 11〉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4	244	179	191	172	134	211
85	3	6	8	8	2	2
90	12	12	8	2	3	6
합계	259	197	207	182	139	21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2〉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백만원)

HS 2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4	2,041	2,357	2,888	3,501	3,987	5,917
85	33	53	90	289	56	127
90	75	122	32	31	83	65
합계	2,149	2,532	3,010	3,821	4,126	6,10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타당성 평가

###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정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연구개발 행위와 같이 외부효과를 띤 재화의 공급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통해 조세부과(조세 감면) 혹은 재정지원 등을 사용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해 관세 감면 시행

## 2)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 정책대상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음
  - 내국세에서도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행하는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어려움
  - 반면 관세 감면 제도는 내국세와 달리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격 연구개발비 여부와는 차이가 있음

## 3)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개발에 대해 내국세에서도 조세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내국세의 조세지원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것이고, 관세 감면은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으로 차이가 있음
  - 내국세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행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제공되지만
  - 관세 감면은 연구개발용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즉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의 조세지원과는 차이가 있어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나.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앞서 살펴본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처럼 외부효과 교정 등과도 관련성이 낮음
  - 이 밖에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타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생산 및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관세 감면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여 및 부차적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정부가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국내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해외 기업)와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커짐
- 종합해보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시행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관세 감면 제도에 비해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관세 감면으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산업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2)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 2012년부터 관세 감면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되었는데, 이는 WTO보조금협정에 따라 상계관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 아마도 대기업을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 WTO보조금협정에 의해 특정 기업이 조세지원(관세 감면) 혜택의 거의 대부분을 받고 있다면 특정성을 위반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만약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WTO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지원되는 관세 감면 규모를 모니터링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낮추거나 혹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으로 이들 물품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기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관세 납부 또한 불가피하게 됨
  -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감경시켜 주기 위해 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라는 정책과 상반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8%를 중심관세율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관세율 수준을 통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줄이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기려는 정책의도임
  - 특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3)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중복될 수 있음
  - 이처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3. 효과성 평가

###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통해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했는지 분석함
- 본 제도의 목적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실험실습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감면혜택을 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를 지닌 물품의 수입내역과 해당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함
-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본 제도를 통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액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②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 수혜 여부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다만 연구개발비 변수를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을 활용해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봄
- 이를 위해 관세청 자료에서 법인사업자별 수입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국세청 자료에 결합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 물품은 수입건수와 금액 기준, 주로 본 제도 수혜 법인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
  - 본 제도 수혜 법인은 비수혜 법인과 비교했을 때 자산, 자본, 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규모가 더 큼
- 법인, 지역, 업종, 사업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 수혜금액과 수혜 여부는 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단 본 제도 수혜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세 감면액의 증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
  - 하지만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재무상황이 크게 다르고, 자료의 한계상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비 자체가 아닌 세액공제액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결론 도출에 한계가 있음

## 나.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임
  - 본 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세청에서 지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생산력 제고와 품질 향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감면혜택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를 지닌 물품의 수입내역과 해당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함
  
-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본 제도를 통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액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②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 수혜 여부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을 사용함
  
- 이를 위해 관세청 자료에서 법인사업자별 수입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국세청 자료에 결합함
  
-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 물품은 수입건수 기준, 주로 해당 물품을 수입했으나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의 수혜 법인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
  - 본 제도 수혜 법인은 해당 물품의 총수입건수는 작으나, 해당 물품 수입 시 주로 본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음
  
- 하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이 평균적으로 더 비싼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 감면 혜택의 크기가 더 큼
  - 해당 물품 한 건의 수입내역당 공장자동화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 감면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남

-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의 규모는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법인, 지역, 업종, 사업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함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금액의 합계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총자산순이익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나머지 재무성과 변수에 대해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 금액 합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포함해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했을 경우에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다만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수입건수, 관세 감면 금액, 자산·자본·부채 등 재무상황과 관측치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들 법인 사이의 이질성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4. 향후 제도 개선방안

-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조세지원 제도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조세지원 제도가 유지 가능함

- 연구개발용 물품은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기에 감면 신청, 사후관리 등의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이후 7년간 몇 개의 품목만 수입되거나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다수
  - 감면 신청, 사후관리 등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불분명
  - FTA를 통해 관세 부담이 없어진 품목은 관세 감면에서 제외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국제적 관례, 관세 적용 원칙, 외부효과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에 따른 타당성은 부족하나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관세부담을 감경시켜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집행 가능함
  
- 다만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 혜택이 국내 중소기업 이외에 해외생산자에 게도 돌아갈 수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 중견기업의 상계관세 문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서론	27
II.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33
1. 전체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35
가. 전체 관세 감면 제도 구분	35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현황	54
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현황	59
2. 관세 감면 실적 분석	65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65
나.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77
3. 관세 감면의 이론적 논의	82
가. 관세 감면과 다른 조세 감면과의 차이점	82
나. 부분균형 분석	83
4. 주요국의 유사한 관세 감면 제도	90
가. 일본	90
나. 미국	96
다. 중국	98
라. EU	99
마. 호주	100
바. 캐나다	101
III. 타당성 평가	103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105
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105
나.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106

다.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107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108
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108
나.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	110
다.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113
<b>IV. 효과성 평가 .....</b>	<b>115</b>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117
가. 분석 개요 .....	117
나. 분석 대상 자료 .....	117
다. 기초통계 분석 .....	119
라. 실증분석 .....	126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133
가. 분석 개요 .....	133
나. 분석 대상 자료 .....	134
다. 기초통계 분석 .....	135
라. 실증분석 .....	142
<b>V.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b>	<b>153</b>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155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	155
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	157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	159
<b>참고문헌 .....</b>	<b>162</b>

## 표 목 차

<표 II-1> 관세 면세 분야 현황 .....	42
<표 II-2> 관세 감면율 현황 .....	43
<표 II-3> 관세 감면액 및 관세수입 추이 .....	48
<표 II-4> 근거법 등에 의한 관세 감면 규모 비중 .....	50
<표 II-5> 전체 관세 감면액 추이 .....	52
<표 II-6>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55
<표 II-7> 「관세법」 제102조(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	56
<표 II-8> 「관세법」 제103조(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예외) .....	56
<표 II-9>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사후관리 기간) .....	57
<표 II-10>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 .....	58
<표 II-1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	58
<표 II-12>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변경사항 .....	59
<표 II-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60
<표 II-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61
<표 II-15>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변경 .....	62
<표 II-16>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 .....	63
<표 II-1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	63
<표 II-18>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변경사항 .....	64
<표 II-19>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수입액 비중 .....	66
<표 II-20>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	67
<표 II-2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	67
<표 II-22>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	68
<표 II-23>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	70
<표 II-24>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액 .....	71
<표 II-25>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액 .....	73
<표 II-26>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	74

<표 II-27>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	76
<표 II-28>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	79
<표 II-29>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	79
<표 II-30> 공장자동화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	80
<표 II-31>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	81
<표 II-32>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액 .....	81
<표 II-33>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	82
<표 II-34> 일본 「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	91
<표 II-35>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	94
<표 II-36> 일본의 관세 감면·환급 요건 .....	95
<표 II-37> 미국 특정 요건에 따른 관세 감면 종류 .....	97
<표 II-38> 중국의 관세 감면 종류 .....	98
<표 II-39> 관세 감면 신청서(Form K90) 주요 작성 항목 .....	101
<표 III-1>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액 .....	111
<표 IV-1> 법인세 신고횟수 4회 이하 법인의 이질성 .....	120
<표 IV-2> 연도별 관세 감면/비감면 관측치 수 .....	120
<표 IV-3> 2016년 기준 법인 특성별 업력 .....	121
<표 IV-4> 관세 감면 수혜 여부에 따른 법인 분포 .....	121
<표 IV-5>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수입건수 .....	122
<표 IV-6>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관세, 관세 감면금액 합계 .....	123
<표 IV-7>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자산·자본·부채 현황 .....	125
<표 IV-8>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 .....	126
<표 IV-9>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현황 .....	128
<표 IV-10>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증가율 .....	129

<표 IV-1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금액 합계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에 미친 영향 .....	131
<표 IV-12> 관세 감면 수혜 법인과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에 미친 영향 ..	132
<표 IV-13> 법인세 신고횟수 3회 이하 법인의 이질성 .....	135
<표 IV-14> 연도별 관세 감면/비감면 관측치 수 .....	136
<표 IV-15> 2016년 기준 법인 특성별 업력 .....	136
<표 IV-16> 관세 감면 수혜 여부에 따른 법인 분포 .....	137
<표 IV-17>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수입건수 .....	138
<표 IV-18>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관세, 관세 감면금액 합계 .....	139
<표 IV-19>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자산·자본·부채 현황 .....	141
<표 IV-20>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 .....	142
<표 IV-21>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144
<표 IV-22>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총자산순이익률 ...	144
<표 IV-23>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145
<표 IV-24>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총자산증가율 ...	146
<표 IV-25>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부채비율 .....	147
<표 IV-26>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 금액 합계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	149
<표 IV-27>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	150
<표 IV-28>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	151

## 그림 목 차

[그림 II-1] 관세 감면액 및 관세수입액 추이 .....	47
[그림 II-2] 총국세 및 GDP 대비 관세 감면액 비중 추이 .....	49
[그림 II-3] 관세수입 대비 관세 감면액 비율 추이 .....	50
[그림 II-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	65
[그림 II-5]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1~2017년) .....	65
[그림 II-6]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	77
[그림 II-7]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2~2017년) .....	78
[그림 II-8] 외부 경제의 경우 .....	84
[그림 II-9] 외부 불경제의 경우 .....	85
[그림 II-10]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 .....	87
[그림 II-11] 중간재 감면의 최종재에 대한 효과 .....	88

# I. 서론





##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해 평가할 예정
  - 두 제도가 관세를 감면해준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제도임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함으로써 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정책대상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임
  - 감면 대상 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8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46억원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에 한하여 조세지원을 해줌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2012년 이후 정책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되었으며, 2014년 이후 중견기업이 포함됨
    -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은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적용 대상 기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5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61억원임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모두 일몰 없이 15년 이상 장기간으로 관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임
  - 관세 감면은 다른 내국세 감면과 달리 그 파급효과가 더 큼
    - 내국세 감면은 내국세만 감면되지만, 관세가 면제되면 그 이후 부가되는 내국세도 관세가 감면된 만큼 감면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큼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특성, 적정성 등을 분석할 예정임
  - 우리나라 전체 관세 감면 제도의 변천 및 특징 등의 현황 파악
  - 관세 감면 적용품목의 수입 비중 분석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중 관세 감면이 적용된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액 중 관세 감면을 받아 수입된 비중 비교
  - 관세 감면 적용품목의 수입국 비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중 관세 감면이 적용된 품목들이 어느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지 파악
    - 이들 품목들의 FTA 협정세율을 조사하여 해당 품목이 관세 감면이 아닌 FTA 협정세율로 수입이 가능한지 분석
-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제135조 제5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층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은 정책목적, 대상, 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
    - 이 밖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주요국의 관세 감면 제도 등도 함께 고려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연구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할 수 있지만,
    - 반면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외부효과와 관련 없이 관세 감면 이익이 개별 기업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성 분석은 제도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중심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의 효과성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의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 연구개발 효과와 생산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가능한 자료 여부에 따라 최선의 분석 방법들을 선택하여 효과성 분석 시도
  -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그리고 이론적 검토와 주요국 제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 의견 제시
    - 종합평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 또는 폐지 여부,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는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 조세 지원 제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개선에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정비와 관세 감면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 Ⅱ.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 II.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 1. 전체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 가. 전체 관세 감면 제도 구분

- 관세 감면이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법」에서 산출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함
  -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히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 납부 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일부 면제하는 것을 감세,
  - 납부 의무를 전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고 함
  
- 관세 감면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함
  -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감면이 가능(「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 일반적으로 관세 감면은 크게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조건 감면세는 수입 당시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하는 제도로 수입 후에 특정한 사실에 변경이 있더라도 감면세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즉, 무조건 감면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수입 후 용도를 달리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음
- 무조건 감면세의 종류로는 외교관 면세, 정부용품 면세, 손상물품 감면세 및 재수입 면세 등이 있음
-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특정한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세의 감면분을 추징하는 감면을 말함
  - 그 종류로는 항공기제조용 원료품 등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 학술연구용품 감면, 종교·자선·장애인용품의 감면, 특정 물품의 감면, 환경오염방지 물품의 감면,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등이 있음

### 1) 법률적 근거에 따른 관세 감면

- 현재 관세 감면의 근거 법률로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이 있음
  -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 감면 관련 조항으로는 제118조, 제121의3조, 제121의10조, 제121의11조, 제140조 등이 있음

#### 가) 「관세법」상 관세 감면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는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
  - 이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면세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등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등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음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89조)는 관세율이 불균형한 물품에 대해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항공기제조용 원재료 및 부분품
  - 반도체제조용 장비 및 부속기기

-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감면율을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 항공기제조용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면 100분의 90~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20으로 낮아질 예정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행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감면 대상품목은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80,
  -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용 물품은 100분의 50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는 사회복지 향상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장애인용 물품 및 의료용구 등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등이 포함됨
- 특정 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3조)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포함됨
-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 박람회 등의 사용물품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우리나라 수출물품 첩부용 증표
  -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외사고 혹은 하자보수로 인한 수리물품 등이 포함
  -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에는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여 자가사용할 소액물품 등이 포함됨
  - 상용견품은 미화 250달러 이하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소액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는 오염물질 배출방지 설비, 폐기물처리 설비, 공장자동화용 물품 등에 대해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오염물질 배출방지 설비, 폐기물처리 설비, 등은 100분의 30(중소기업)
  - 공장자동화용 물품은 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고 시 100분의 50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감면세(「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이사물품 등에 대한 면세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결정됨
  
-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는 일시적으로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통상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로 세관장이 정하며, 이 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이와 달리 재수출 감면세(「관세법」 제98조)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됨
  - 감면율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100분의 85 내지 100분의 30이 경감됨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 내에 다시 수입되거나,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임
  - 만일 수출 당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이 있으면 이를 납부해야 함
  
-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 그만큼 관세를 경감하는 규정

-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관세법」 제101조)는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다음 수입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 임가공물품 중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
  - 또는 수출 당시의 HS 10단위와 수입 당시의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것에 한정
  
- 이 밖에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관세법」 제102조)에 대해 「관세법」은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관세는 다시 징수하게 된다고 언급

####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 감면

- 「관세법」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감면이 실시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
    - 감면율은 100분의 50
  - 이 밖에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국제경기,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국제경기에 한해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 건설,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경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 단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민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 및 신설하고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함
  - 자본재는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등을 의미함
  - 이 때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며, 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감면 대상이 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임
  - 이 조항에 의해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 한함
- 제121조의 10에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제121조의 11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여기서 자본재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를 말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

#### 다) 그 밖의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에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해서도 관세가 감면될 수 있음
- 국제기구 등에 의한 관세 감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협정 혹은 협약이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정, 국제식물보호협약,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등
- 특정 국가와 체결한 협정 혹은 약정도 다수 존재
  - 한미 정부 간의 소포우편 협정, 한일 간 항공 협정, 한독 정부 간의 문화협정 등 다수

#### 라) 관세 감면세 유형 및 감면을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관세 감면 중 납부세액을 일부 면제하는 것을 감세라고 하고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
- 관세가 면세되는 분야
  - 외교관용 물품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정부용품
  - 동식물의 번식·양식용 물품 등의 특정 물품
  - 소액물품,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 재수출 및 재수입 면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 등

〈표 II -1〉 관세 면세 분야 현황

근거	조문	분야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특정 물품의 면세 동식물의 번식·양식용 물품,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2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	재수출 면세
	제99조	재수입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
	제121조의 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물품
	제121조의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용 자본재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

자료: 저자 작성

- 관세 납부가 일부 면제되어 감세되는 분야
  - 항공기(원재료 및 부분품) 및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세율불균형 물품, 학술연구용품, 환경오염방지 물품, 공장자동화용 물품, 방위산업용 물품, 해외임가공 물품 등이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국제경기대회용품 등이 포함됨
- 이들 물품의 감면율은 다양함
  - 항공기(원재료 및 부분품) 및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세율불균형 물품은 감면율이 100%로 실질적으로 면세
  - 학술연구용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산업기술연구용품은 80%,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 사용물품은 50%가 각각 적용
  - 환경오염방지 물품은 30%,
  - 공장자동화용 물품은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50% 감면

〈표 II -2〉 관세 감면율 현황

근거	분야	감면율
「관세법」 제89조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 항공기(원재료 및 부분품) ② 반도체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100 100
「관세법」 제90조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연구용품 ②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 사용 물품	80 50
「관세법」 제95조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오염물질 배출방지 설비 ② 폐기물처리 설비 ③ 공장자동화용 물품(2019.12.31)	50 50 중견 30, 중소 50
「관세법」 제98조	- 재수출 감면세	30~85 (재수출기간에 따라 경감됨)
「관세법」 제100조	- 손상감세	가치 저하분에 상응하는 감면
「관세법」 제101조	- 해외입가공물품 등의 감세	
「조특법」 제118조	- 대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50

자료: 저자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 대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국제경기대회용품 등에 대해서는 50% 감세

## 2) 국제관세 및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관세 감면 제도

-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관세법」 조문 중 국제 관세에 의해 관세 감면이 적용되거나 혹은 관세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조문이 다수 존재
  - 일반적으로 관세(Customs duty, Tariffs)라 함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함

### 가) 국제 관세성 감면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는 국제관세에 따라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
  - 이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면세 제도임
-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여 자가사용할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 등에 대해 관세를 면세(「관세법」 제94조)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면제(「관세법」 제99조)
  -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
- 이 밖에 국제조약 중에 감면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국내법에 그 규정이 없더라도 조약 자체에 의해 관세 감면이 이루어짐
  - 현재 우리나라는 100여개가 넘는 국제기구 및 양국 간 협약, 협정 등에 의해 관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협약 및 협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세 감면은 전체 관세 감면액의 약 1% 정도로 그 규모는 미미함

## 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 관세는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부과 원칙에 의해 관세 감면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
  - 일시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거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그만큼의 관세경감 등이 있음
  
-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면제(「관세법」 제97조)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감면 적용(「관세법」 제98조)
  - 감면율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100분의 85 내지 100분의 30이 경감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 내에) 다시 수입되거나,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면제(「관세법」 제99조)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 그만큼 관세 경감(「관세법」 제100조)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다음 수입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관세법」 제101조)

## 다) 그 밖의 관세 감면

- 국제적 관례 또는 관세의 과세 원칙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세 감면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적 관례 또는 관세의 과세 원칙 이외에 정책적으로 외부경제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해 관세 감면이 적용되기도 함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 자선용품·장애인용품(「관세법」 제90조)
  - 정부용품(「관세법」 제92조)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관세법」 제96조) 등에 대해서 감면세가 적용됨
  
-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에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물품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세(「관세법」 제93조)를 적용하고 있음
  -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 박람회 등의 사용물품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우리나라 수출물품 첩부용 증표
  -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외사고 혹은 하자보수로 인한 수리물품 등이 포함
  -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
  
-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만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물품들이 있음
  - 세울불균형 물품의 감면세(「관세법」 제89조)
    - 항공기제조용 원재료 및 부분품
    - 반도체제조용 장비 및 부속기기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 오염물질 배출방지 설비, 폐기물처리 설비, 공장자동화용 물품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국제경기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 건설,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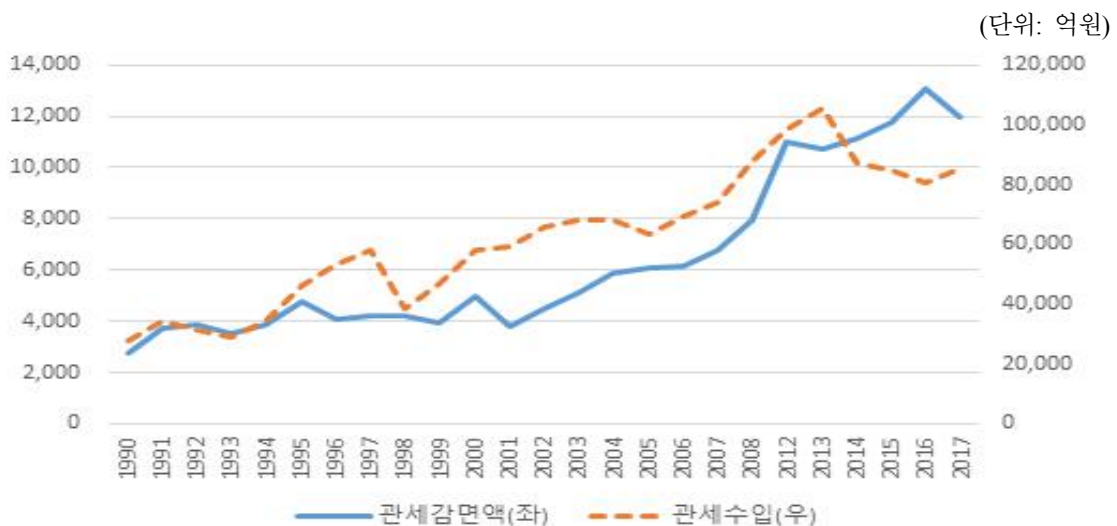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3) 관세 감면 규모

#### 가) 전체 관세 감면 규모

- 1990년 약 2,776억원이었던 관세 감면액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2년 1조 원을 상회하였고, 2017년에는 약 1조 1,998억원
- 관세수입은 관세 감면액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약 10조 5,61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약 8조 5,292억원까지 감소
- 관세수입과 관세 감면액의 총합 대비 관세 감면액 비율은 6~14%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2017년은 약 12.3%임

[그림 II -1] 관세 감면액 및 관세수입액 추이



주: 2009~2011년 관세 감면액 자료 없음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3〉 관세 감면액 및 관세수입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관세 감면액	관세수입	비율
1990	2,776	27,654	9.1
1991	3,711	34,352	9.7
1992	3,898	31,582	11.0
1993	3,538	28,859	10.9
1994	3,872	34,489	10.1
1995	4,757	46,332	9.3
1996	4,073	53,094	7.1
1997	4,218	57,976	6.8
1998	4,248	38,360	10.0
1999	3,910	46,873	7.7
2000	4,949	57,997	7.9
2001	3,807	59,234	6.0
2002	4,479	66,013	6.4
2003	5,088	68,473	6.9
2004	5,849	67,965	7.9
2005	6,102	63,177	8.8
2006	6,133	69,400	8.1
2007	6,757	74,107	8.4
2008	7,944	87,751	8.3
2012	11,027	98,157	10.1
2013	10,733	105,616	9.2
2014	11,148	87,210	11.3
2015	11,749	84,954	12.1
2016	13,091	80,454	14.0
2017	11,998	85,292	12.3

주: 1. 비율은 관세수입과 관세 감면액의 총합 대비 관세 감면액 비율임  
 2. 2009~2011년 관세 감면액 자료 없음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00년 이후 총국세 대비 관세 감면액은 약 0.5% 수준임
  - 1%를 상회하던 총국세 대비 관세 감면액 비중은 1993년 1%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00년부터는 약 0.5% 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음
- GDP 대비 관세 감면액 비중은 1990년 약 0.1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1년 0.06%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관세 감면액 비중은 약 0.07%
- 이는 최근(2000년 이후) 관세 감면 규모를 총국세, GDP 등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경제 규모와 관세 감면액 규모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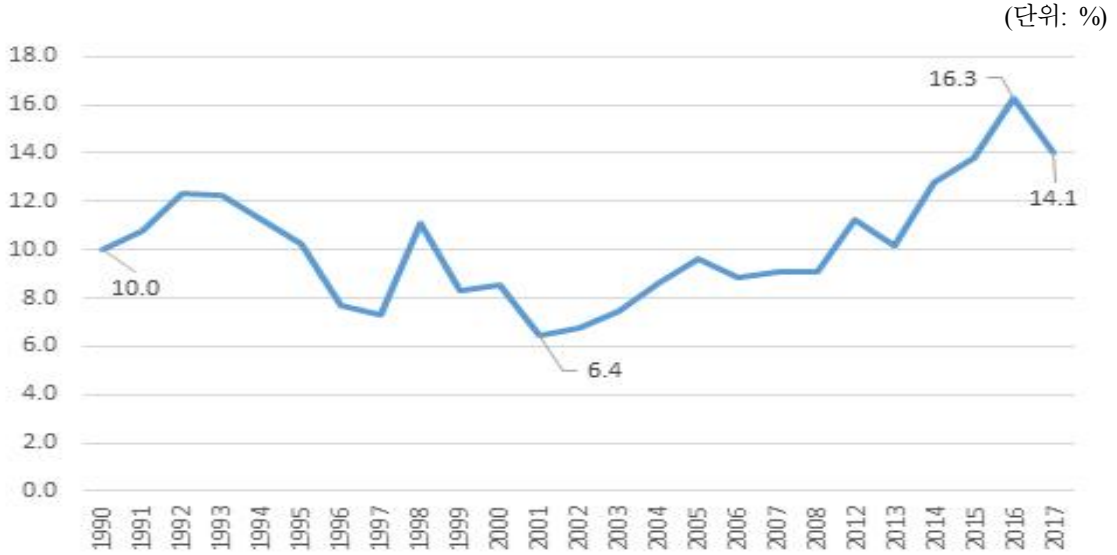
[그림 II -2] 총국세 및 GDP 대비 관세 감면액 비중 추이



주: 2009~2011년 관세 감면액 자료 없음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수입 대비 관세 감면액 비율은 199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2001년 약 6.4%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며 2017년 약 14.1%까지 상승
  - 2001년 이후에는 관세 감면액이 관세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아마도 FTA 확산으로 관세수입의 증가 추세는 둔화된 반면 관세 감면 규모는 경제성장이 반영되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됨

[그림 II -3] 관세수입 대비 관세 감면액 비율 추이



주: 2009~2011년 관세 감면액 자료 없음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관세 감면 근거법에 따른 구분

- 관세 감면은 대부분 「관세법」에 의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기준 「관세법」에 의한 관세 감면이 전체 관세 감면액 중 약 85.1%를 차지하여 관세 감면 대부분이 「관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감면 비중은 약 2.8%
  - 그 외 「FTA 관세특례법」, 「자유무역지역법」, SOFA 협정, 기타협정(항공협정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은 약 12.1%
    - 「FTA 관세특례법」이 약 6.8%, SOFA 협정이 약 5.1%, 기타협정(항공협정 등)이 약 0.2%임

<표 II -4> 근거법 등에 의한 관세 감면 규모 비중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세법」	86.4	88.6	88.3	85.4	79.9	85.1
「조특법」	5.1	2.9	2.8	4.0	1.9	2.8
기타	8.5	8.5	8.9	10.6	18.2	12.1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 근거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법」에 의한 관세 감면액은 2017년 약 1.02조원임
  - 이는 2016년 약 1조 457억원에 비해 약 246억원 감소한 수치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법」에 의한 관세 감면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만 전년 대비 감소하며 하락하였음
  
- 「관세법」에 의한 감면 중에서는 「관세법」 제101조 해외입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해외입가공물품 관세 감면액은 약 3,124억원으로 전체 감면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해외입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2013년 큰 폭으로 증가(2012년 약 1,446억원→ 2013년 약 3,283억원)하였고, 이후에는 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재수입면세액은 약 1,618억원으로 전체 감면의 약 13.5%를 차지
  - 그 밖에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 물품), 제94조(소액물품), 제97조(재수출면세물품), 제92조(정부용품), 제93조(박람회 등 특정 물품) 등이 약 5~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액은 2017년 약 147억원으로 전체 감면의 약 1.2%를 차지
    - 2012년 이후 전체 감면 대비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비중은 매년 약 2% 내외임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액은 2017년 약 61억원으로 전체 감면 대비 약 0.5%를 차지
    - 2012년 이후 전체 감면 대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액 비중은 매년 약 0.5% 미만으로 전체 감면액 대비 미미한 수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감면에서는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외국인투자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은 전체 관세 감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5> 전체 관세 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근거	근거	'12		'13		'14		'15		'16		'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감면액(A)		11,027	100	10,773	100	11,148	100	11,749	100.00	13,091	100.00	11,998	100.00
《「관세법」》		9,527	86.40	9,548	88.63	9,847	88.33	10,032	85.40	10,457	79.90	10,211	85.10
외교관용품	§88	12	0.11	16	0.15	9	0.08	49	0.40	73	0.60	84	0.70
세울불균형 물품	§89	1,142	10.36	1,003	9.35	917	8.23	1,029	8.80	1,100	8.40	1,291	10.80
└ 항공기 관련 물품		686	6.22	670	6.24	708	6.35	829	7.10	964	7.40	1,143	9.50
└ 반도체 관련 물품		456	4.14	308	2.87	209	1.87	200	1.70	135	1.00	147	1.20
학술연구용품	§90①(1-3)	200	1.81	144	1.34	137	1.23	153	1.30	104	0.80	72	0.60
산업기술 R&D 물품	§90①(4)	200	1.81	216	2.01	218	1.96	206	1.70	172	1.30	147	1.20
종교·자선용품	§91(1-3)	0	0.00	1	0.01	0	0.00	0.07	0.00	0.02	0.00	6	0.10
장애인용품	§91(4·5)	219	1.99	214	1.99	211	1.89	220	1.90	186	1.40	210	1.70
정부용품	§92	515	4.67	735	6.85	900	8.07	1,029	8.80	955	7.30	828	6.90
특정 물품 (박람회 등)	§93	760	6.89	689	6.42	663	5.95	612	5.20	582	4.40	688	5.70
소액 물품	§94	524	4.75	685	6.38	1,024	9.19	806	6.90	887	6.80	1,023	8.50
환경오염방지 물품	§95①(1-2)	80	0.73	37	0.34	0	0.00	0.24	0.00	0.07	0.00	0	0.00
공장자동화 물품	§95①(3)	21	0.19	25	0.23	31	0.28	38	0.30	41	0.30	61	0.50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96①	-	0.00	35	0.33	38	0.34	38	0.30	36	0.30	32	0.30
재수출 면세	§97	-	0.00	916	8.53	810	7.27	913	7.80	1,022	7.80	967	8.10
재수출 감면세	§98	17	0.15	52	0.48	11	0.10	64	0.50	140	1.10	60	0.50
재수입 면세	§99	834	7.56	1,496	13.94	1,483	13.30	1,627	13.80	1,682	12.80	1,618	13.50
손상감세	§100	42	0.38	0	0.00	1	0.01	0.09	0.00	0.09	0.00	0	0.00
해외입가공감세	§101	1,446	13.11	3,283	30.59	3,393	30.44	3,248	27.60	3,478	26.60	3,124	26.00

구분 근거	근거	'12		'13		'14		'15		'16		'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b>《조세특례제한법》</b>		<b>559</b>	<b>5.07</b>	<b>314</b>	<b>2.91</b>	<b>313</b>	<b>2.81</b>	<b>471</b>	<b>4.00</b>	<b>248</b>	<b>1.90</b>	<b>338</b>	<b>2.80</b>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118①(3)	88	0.80	54	0.50	5	0.04	2	0.00	3	0.00	2	0.00
디지털방송장비 감면	§118①(10)	6	0.05										
2012여수세계 박람회	§118①(11)	2	0.02										
'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118①(14)							0	0.00	0	0.00	0	0.00
포물러원	§118①(17)							0	0.00	0	0.00	0	0.00
'18평창동계 올림픽, 동계패럴림픽대회	§118①(19)							0	0.00	0	0.00	0	0.00
'15문경군인 체육대회	§118①(20)							0	0.00	0	0.00	0	0.00
국내복귀기업	§118의2					1	0.01	0.24	0.00	0.46	0.00	0.13	0.00
외국인투자 자본제	§121의3	441	4.00	259	2.41	256	2.30	210	1.8	181	1.40	214	1.80
제주첨단기술단지	§121의10							0	0.00	0	0.00	0	0.00
제주투자진흥지구	§121의11							0	0.00	0	0.00	0	0.00
금거래소용금지금	§126의7⑨							0	0.00	3	0.00	7	0.10
해저광물탐사기계	§140	22	0.20	1	0.01	52	0.47	259	2.20	61	0.50	115	1.00
<b>《기타 감면》</b>		<b>941</b>	<b>8.53</b>	<b>911</b>	<b>8.45</b>	<b>989</b>	<b>8.87</b>	<b>1,245</b>	<b>10.60</b>	<b>2,386</b>	<b>18.20</b>	<b>1,449</b>	<b>12.10</b>
「자유무역지역법」	§46							0	0.00	2	0.00	3	0.00
「FTA관세특례법」	§30							675	5.70	789	6.00	810	6.80
SOFA 협정				359	3.34	475	4.26	562	4.80	1,585	12.10	616	5.10
기타협정 (항공협정 등)				552	5.14	514	4.61	8	0.10	10	0.10	19	0.20

주: '기타 감면'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관세 감면 불포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

##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현황

### 1) 도입 목적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1982년 재무부령에 의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개발 연구용품 및 실험실습 용품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되기 시작
  - 매년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고시를 통하여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음

### 2) 정책대상자

- 감면 대상기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 감면 대상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대상 물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고시한 물품
  -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약 및 견품

- 연구·개발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표 II -6>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③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http://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검색일자: 2019. 1. 24)

**3) 수혜내용**

-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80% 관세 감면
  - 제도 시행 당시 실행관세율이 20% 이하인 물품은 65%, 실행관세율이 20% 이상인 물품은 70% 감면
  - 1988년에는 65%로 단일화
  - 1992년에는 80%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의 사후관리(「관세법」 제102조 제1항)
  - 연구개발용 물품 등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할 수 없음

- 다만 사후관리 대상 중에서 제90조(연구개발용 기자재 포함),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음(「관세법」 제103조 제2항)

<표 II -7> 「관세법」 제102조(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제102조(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관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검색일자: 2019. 1. 24)

<표 II -8> 「관세법」 제103조(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예외)

**제103조(관세 감면 물품의 용도의 사용)**

②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관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검색일자: 2019. 1. 24)

□ 사후관리 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은 3년(다만 연구개발용 기자재 등 학술연구용품 감면의 경우 2년), 4년인 물품은 2년, 3년 이하인 물품은 1년 이내
-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1년 이내
- 장애인 등 특정인을 위한 사용 물품과 타용도 사용이 불가한 금형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 박람회, 전시회 등 특정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용도의 소멸일 또는 행사의 종료일까지
- 원재료, 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1년 이내
- 관세 감면 물품의 관세율 × 감면율이 3% 이하는 1년 이내
- 관세 감면 물품의 관세율 × 감면율이 7% 이하는 2년 이내

<표 II -9>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사후관리 기간)

**제110조(감면 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 제2항·법 제88조 제2항 또는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감면 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2년
  -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관세 감면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 감면 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
4.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자료: 「관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검색일자: 2019. 1. 24)

#### 4) 감면 대상 품목

-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감면 수요 반영 등을 위해 매년 조정되어 왔음
  - 2018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는 총 121개로 전년 133개에 비해 12개 감소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함

<표 II -10>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물품수	257	277	261	220	133	124	134	133	121

자료: 기획재정부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연도

#### 5) 조세지출 규모

-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46억원이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200억원 가까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 -1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전망)	2019 (전망)
관세	303	278	200	208	213	204	170	146	193	19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6) 제도 연혁

- 1982년 관세 감면 조항이 신설된 이후 감면 대상 기관, 감면 대상 물품, 그리고 감면을 등의 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졌음
  - 감면 대상 기관은 1990년과 2011년에 확대되었으며

- 감면율은 1982년 제도 시행 당시 실행관세율에 따라 65% 혹은 70%를 감면하였지만, 1988년에는 65%로 단일화되고, 1992년에는 80%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감면 수요 반영 등을 위해 매년 조정되어 왔음

<표 II -12>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2. 12	○ 감면조항 신설(「조세 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제5호) 및 대상 물품 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및 당해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1988. 1	○ 연구개발용품 감면율을 65%로 단일화
1988. 12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관세 감면규정 이관(「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9호)
1990. 5	○ 감면 대상 기관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추가(「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항)
1992. 1	○ 감면 대상 물품에 연구개발용 시약, 시험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추가(「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3호) ○ 연구개발용품 감면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8조)
1999. 12	○ 국내제작 가능 여부 확인절차 삭제(「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9호) - 기존에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작의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2000. 12	○ 「관세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로 이관)
2009. 12	○ 감면 대상 물품 추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 - 연구개발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 관세 감면 고시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추가
2010. 12	○ 「관세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로 이관)

자료: 「관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0000>(검색일자: 2019. 1. 24)

## 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현황

### 1) 도입목적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에 한하여 조세지원을 해줌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 2) 정책대상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2011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음
  - 2012년부터 중소기업체에만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다가
  - 2014년부터 중견기업까지 정책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표 II -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8. 8. 1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2011. 7. 25. 개정)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015. 2. 3. 개정)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011. 7. 25. 개정)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2011. 7. 25. 개정)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6. 1. 27. 개정)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8. 8. 14. 신설)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27&efYcd=20190215#0000>(검색일자: 2019. 1. 24)

〈표 II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 2. 21.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4. 2. 21.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 2. 7. 개정)
  -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17. 2. 7. 개정)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7. 2. 7.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17. 2. 7.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 2. 3. 개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929&efYd=20190101#0000>(검색일자: 2019. 1. 24)

3) 수혜내용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
  -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30%의 감면을 적용(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적용)
  -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30%의 감면을 적용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시기별 그리고 정책대상자별로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음
  - 중소기업의 관세 감면율은 50%에서 30%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50%로 상향 조정되었음
  - 대기업의 관세 감면율은 40%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2012년 이후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2014년부터 중소기업까지 정책대상자로 지정되면서 관세 감면율은 50%에서 2019년 30%로 조정됨

〈표 II -15〉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변경

연도	일몰	감면율
1993. 12	감면조항 신설	
2000. 12	일몰 신설: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4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5. 12	일몰 연장: 200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7. 12	일몰 연장: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8. 12	일몰 연장: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20% 감면, 중소기업: 40% 감면
2009. 12	일몰 연장: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20% 감면, 중소기업: 40% 감면
2010. 12	일몰 연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10% 감면, 중소기업: 30% 감면
2011. 12	일몰 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30% 감면
2013. 10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30% 감면 (2014년 3월 31일까지는 50% 감면)
2014. 10	적용 확대(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2015. 12	적용 확대(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2016. 12	적용 확대(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2018. 12	적용 확대(2019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자료: 「관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0000>(검색일자: 2019. 1. 24)

-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용 물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후관리를 적용받음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95조)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할 수 없음

#### 4) 감면 대상 품목

-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은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 반영 등을 위해 매년 조정되어 왔음
  - 2018년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는 총 68개로 전년 79개에 비해 11개 감소
  - 품목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향온향 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

<표 II -16>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

(단위: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물품수	66	56	44	62	59	79	68

자료: 기획재정부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연도

### 5) 조세지출 규모

-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약 61억원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90억원으로 추정됨

<표 II -1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전망)	2019 (전망)
관세	802	284	21	27	30	38	41	61	90	9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6) 제도 연혁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자주 변경되었음
  - 2012년부터 감면 대상자에서 대기업 제외
  - 2013년에는 일몰제 폐지
  - 2014년부터 중견기업으로 감면 대상자 확대

<표 II -18>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3. 12	○ 감면조항 신설(「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대상 물품 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
2000. 12	○ 「관세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로 이관) 및 일몰제 도입(「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4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5. 12	○ 감면을 인하 및 일몰 연장 -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3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7. 12	○ 일몰 연장 -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3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8. 12	○ 감면을 인하 및 일몰 연장 -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20% 감면(중소제조업체: 40% 감면)
2009. 12	○ 감면 대상 물품 별표 통합(별표에 따른 지정품목으로 변경) 및 일몰 연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20% 감면(중소제조업체: 40% 감면)
2010. 12	○ 감면을 인하 및 일몰 연장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 감면(중소제조업체: 30% 감면)
2011. 4	○ 조문 변경(「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로 이관)
2011. 12	○ 적용대상 축소(중소제조업체로 한정) 및 일몰 연장 -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30% 감면
2013. 10	○ 일몰제 폐지 및 한시적 감면을 확대(50%) 적용 -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30% 감면(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50% 감면)
2014. 10	○ 한시적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감면을 50%) 적용 -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경우: 30% 감면(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중견제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2015.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2016.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19년 12월 31일까지) -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중견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30% 감면

자료: 「관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0000>(검색일자: 2019. 1. 24)

## 2. 관세 감면 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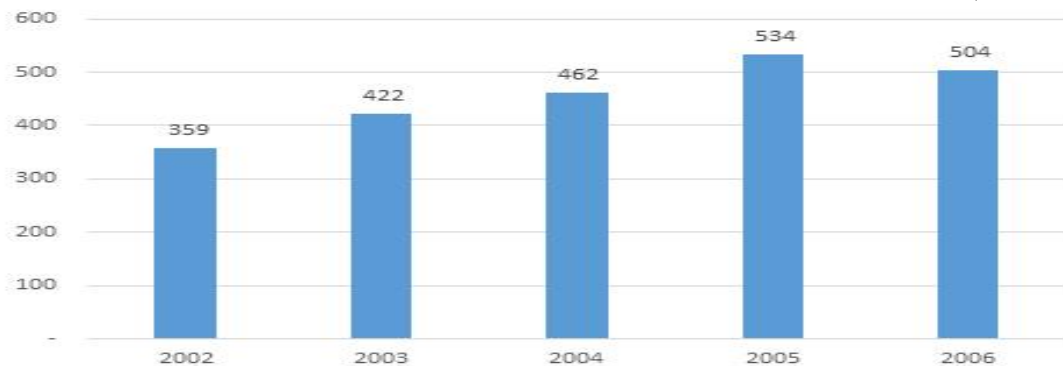
###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 1) 관세 감면 규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02년에는 약 359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관세 감면액은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약 500억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약 200억원 내외로 감소하였음

[그림 II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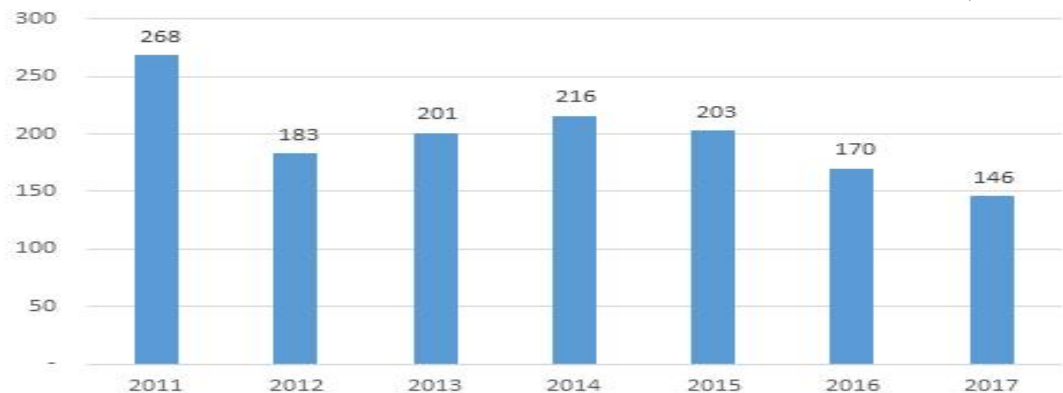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5]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1~2017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입액은 전체 교역 수입액 대비 약 0.07% 수준으로 매우 미미함
  - 동일한 품목이라고 해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것의 비중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은 당연함
    -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매우 높기도 함
  - 2017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수입 총액은 약 2,826억원이며,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중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교역 수입액은 약 478조원
    -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들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함
  - 한편 전체 교역 수입액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약 0.07% 내외

〈표 II -19〉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의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교역 수입액	감면 혜택 물품의 수입액	비중
2011	524,860,515	447,764	0.09
2012	543,208,878	327,166	0.06
2013	499,524,002	360,775	0.07
2014	489,593,358	371,107	0.08
2015	433,642,759	332,927	0.08
2016	415,657,144	283,723	0.07
2017	478,183,643	282,604	0.06

주: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대상 품목들의 전체 과세가격 수치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관세 감면 품목별 분석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HS 10자리 기준 총 951개임
  - 이들 물품의 관세 감면액은 약 146억원
  - 감면 혜택 물품 수는 2011년 863개에서 2017년 951개로 증가하였으나, 관세 감면액은 2011년 약 268억원에서 2017년 약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II -20>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감면 받은 물품 수	관세 감면액
2011	863	26,803
2012	933	18,275
2013	990	20,089
2014	984	21,550
2015	991	20,274
2016	972	16,975
2017	951	14,568

주: 감면 혜택 물품 수는 HS 10자리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의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만원 정도임
  - 관세 감면을 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임
  - 관세 감면을 받은 연구개발용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은 2011년에는 5억원이 약간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과세가격이 감소하여 2017년에는 3억원 이하로 감소하였음
  - 연차적으로 과세가격(수입가격)이 저렴한 것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관세 감면액도 2011년에는 3천만원을 약간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감소하여 2017년에는 약 1,500만원 정도임
    - 과세가격과 관세 감면액이 비례적이지 않는데, 이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임

<표 II -2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연도	과세가격	관세 감면액
2011	518,846	31,058
2012	350,660	19,588
2013	364,419	20,292
2014	377,141	21,900
2015	335,950	20,458
2016	291,896	17,464
2017	297,165	15,319

주: 물품당 과세가격, 관세액, 관세 감면액은 HS10 자리 기준 물품 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거의 모든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에는 기계류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연구개발용 물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7년 동안 단 1품목만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10건 미만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표 II -22〉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1	-	-	-	1	-	-	-
02	-	-	-	-	1	1	-
09	-	-	-	-	-	-	1
10	-	-	-	-	-	1	-
11	1	-	-	-	-	-	-
12	-	-	1	-	1	-	2
13	-	2	1	-	-	-	-
15	2	2	2	2	2	1	2
16	-	-	-	1	1	1	-
19	-	1	-	-	-	-	-
20	-	-	-	1	3	-	1
21	1	-	2	1	4	1	1
22	-	-	-	2	-	-	1
23	-	-	1	-	-	-	-
24	1	2	3	-	-	-	2
25	-	1	1	2	2	1	2
27	4	5	6	7	6	6	8
28	40	36	41	31	35	32	32
29	23	37	60	39	33	45	39
30	3	5	6	5	5	4	3
31	-	-	-	-	-	-	1
32	31	26	22	18	19	18	13
33	-	-	2	-	1	1	1
34	7	10	5	4	5	4	6
35	6	5	6	5	6	5	7
37	8	9	9	10	9	7	7
38	22	28	25	21	17	23	21
39	50	49	60	64	60	60	60
40	13	15	22	26	25	32	22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1	-	-	-	-	1	-	1
42	-	1	6	6	4	4	4
43	1	-	-	-	-	-	-
44	-	-	-	4	4	2	-
48	-	-	1	3	3	1	1
50	-	-	-	-	1	-	-
51	-	-	-	-	2	5	-
52	-	-	-	1	-	1	-
54	-	-	-	1	-	-	1
55	-	-	-	-	-	2	1
56	6	3	2	4	2	2	3
57	-	1	1	2	2	3	-
58	-	1	-	-	-	-	-
59	2	1	-	-	1	1	2
63	1	2	3	5	4	2	3
68	6	6	4	7	5	3	5
69	7	5	4	5	3	8	7
70	29	26	25	26	25	21	21
71	10	11	8	7	7	8	5
72	1	1	4	5	2	2	2
73	27	24	28	27	30	30	27
74	12	14	13	11	12	13	11
75	3	3	4	2	5	6	4
76	14	13	9	12	13	6	9
78	-	1	-	-	-	-	-
79	2	1	2	1	-	2	2
80	1	1	1	-	1	2	2
81	10	15	15	12	10	8	6
82	4	3	5	5	6	6	6
83	9	9	9	13	11	11	12
84	171	190	180	191	180	184	181
85	175	192	226	226	259	236	236
86	-	-	-	-	-	-	1
87	37	42	40	38	38	38	44
90	112	124	113	108	95	104	104
91	1	1	1	4	10	6	4
93	-	-	-	2	5	-	-
94	5	5	8	12	11	8	6
95	-	-	1	2	-	1	6
96	5	4	2	2	4	3	2
합계	863	933	990	984	991	972	951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앞의 자료 중에서 연간 최소 20건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11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들 품목군이 전체 감면 대상 물품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무기화합물(HS 28), 유기화합물(HS 29), 화학공업생산물(HS 38), 플라스틱류(HS 39), 고무류(HS 40), 유리(HS 70), 철강(HS 73),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정밀기기(HS 90) 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 -23>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8	40	36	41	31	35	32	32
29	23	37	60	39	33	45	39
38	22	28	25	21	17	23	21
39	50	49	60	64	60	60	60
40	13	15	22	26	25	32	22
70	29	26	25	26	25	21	21
73	27	24	28	27	30	30	27
84	171	190	180	191	180	184	181
85	175	192	226	226	259	236	236
87	37	42	40	38	38	38	44
90	112	124	113	108	95	104	104
합계	699	763	820	797	797	805	787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감면액도 거의 모든 품목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관세 감면액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표 II -24〉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백만원)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1	-	-	-	0	-	-	-
02	-	-	-	-	2	0	-
09	-	-	-	-	-	-	1
10	-	-	-	-	-	4	-
11	0	-	-	-	-	-	-
12	-	-	0	-	2	-	3
13	-	16	0	-	-	-	-
15	1	1	1	2	2	1	1
16	-	-	-	0	-	0	-
19	-	0	-	-	-	-	-
20	-	-	-	0	1	-	0
21	0	-	1	0	2	0	0
22	-	-	-	1	-	-	0
23	-	-	0	-	-	-	-
24	1	4	1	-	-	-	1
25	-	0	1	0	0	0	0
27	8	5	6	11	6	9	10
28	38	40	81	71	59	76	81
29	34	34	19	38	11	35	31
30	80	89	98	130	82	0	3
31	-	-	-	-	-	-	0
32	655	827	1,029	1,260	569	596	827
33	-	-	0	-	0	0	0
34	21	43	9	13	9	3	2
35	3	21	17	14	91	88	138
37	136	250	199	89	123	113	67
38	276	303	251	140	314	216	239
39	141	148	141	118	155	120	147
40	131	73	49	53	253	141	127
41	-	-	-	-	0	-	0
42	-	0	19	26	0	8	0
43	0	-	-	-	-	-	-
44	-	-	-	0	0	0	-
48	-	-	-	-	0	-	-
50	-	-	-	-	0	-	-
51	-	-	-	-	0	1	-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2	-	-	-	1	-	0	-
54	-	-	-	0	-	-	0
55	-	-	-	-	-	0	0
56	1	2	2	3	0	0	0
57	-	0	1	0	1	1	-
58	-	0	-	-	-	-	-
59	0	4	-	-	0	0	0
63	0	17	34	85	31	26	11
68	25	19	14	6	15	2	2
69	35	13	12	99	10	53	28
70	125	115	190	776	226	295	198
71	32	135	77	53	36	4	23
72	1	2	5	2	0	1	2
73	92	27	35	92	100	165	132
74	25	98	136	18	10	7	4
75	26	4	14	0	1	0	12
76	50	58	10	14	36	2	8
78	-	1	-	-	-	-	-
79	2	0	3	0	-	0	0
80	1	2	0	-	1	3	2
81	31	45	68	53	15	18	5
82	2	1	0	0	1	0	0
83	8	21	26	27	27	46	118
84	6,242	4,705	5,209	4,704	2,771	3,225	3,130
85	2,798	2,130	2,117	2,853	4,322	2,858	1,711
86	-	-	-	-	-	-	0
87	4,201	1,988	2,054	3,082	3,689	3,230	3,804
90	11,514	7,019	8,058	7,587	6,591	5,394	3,621
91	0	0	0	7	2	8	2
93	-	-	-	0	1	-	-
94	32	13	101	119	703	225	75
95	-	-	0	1	-	-	2
96	36	0	0	0	3	0	0
합계	26,804	18,273	20,088	21,548	20,273	16,974	14,568

주: 1. -: 감면액이 없는 경우

2. 0: 감면액은 있으나 백만원 단위 미만인 경우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앞서와 마찬가지로 앞의 자료 중에서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17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음
  - 이 중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등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임
  - 이 밖에 안료(HS 32)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25>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백만원)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0	80	89	98	130	82	0	3
32	655	827	1,029	1,260	569	596	827
35	3	21	17	14	91	88	138
37	136	250	199	89	123	113	67
38	276	303	251	140	314	216	239
39	141	148	141	118	155	120	147
40	131	73	49	53	253	141	127
70	125	115	190	776	226	295	198
71	32	135	77	53	36	4	23
73	92	27	35	92	100	165	132
74	25	98	136	18	10	7	4
83	8	21	26	27	27	46	118
84	6,242	4,705	5,209	4,704	2,771	3,225	3,130
85	2,798	2,130	2,117	2,853	4,322	2,858	1,711
87	4,201	1,988	2,054	3,082	3,689	3,230	3,804
90	11,514	7,019	8,058	7,587	6,591	5,394	3,621
94	32	13	101	119	703	225	75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의 HS 2단위별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약 1천~9백만원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평균 약 60만원 수준
  - 평균 약 60만원은 2011~2017년 전체기간으로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감면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값임

〈표 II -26〉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1	-	-	-	22	-	-	-
02	-	-	-	-	832	335	-
09	-	-	-	-	-	-	423
10	-	-	-	-	-	982	-
11	1	-	-	-	-	-	-
12	-	-	69	-	1,897	-	1,114
13	-	4,106	44	-	-	-	-
15	97	247	119	173	159	146	189
16	-	-	-	240	-	312	-
19	-	23	-	-	-	-	-
20	-	-	-	18	132	-	9
21	19	-	691	23	211	130	21
22	-	-	-	408	-	-	7
23	-	-	-	-	-	-	-
24	37	213	148	-	-	-	44
25	-	30	284	89	33	191	168
27	838	587	564	362	482	739	383
28	282	228	334	313	196	191	218
29	430	387	138	390	117	192	322
30	1,950	1,304	1,375	2,158	1,787	5	346
31	-	-	-	-	-	-	183
32	2,107	2,260	2,455	2,825	1,219	1,105	1,670
33	-	-	-	-	10	40	30
34	513	604	233	505	393	389	168
35	145	350	438	122	290	275	866
37	502	762	519	308	318	411	295
38	655	426	350	203	422	324	354
39	321	276	234	182	182	156	232
40	430	260	137	153	507	273	231
41	-	-	-	-	95	-	89
42	-	26	1,094	853	19	898	26
43	52	-	-	-	-	-	-
44	-	-	-	22	6	23	-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8	-	-	-	-	-	-	-
50	-	-	-	-	17	-	-
51	-	-	-	-	57	212	-
52	-	-	-	738	-	113	-
54	-	-	-	424	-	-	172
55	-	-	-	-	-	25	22
56	143	265	238	185	35	11	39
57	-	6	466	40	198	328	-
58	-	16	-	-	-	-	-
59	153	587	-	-	-	1	25
63	112	2,804	1,146	6,082	1,272	1,885	461
68	982	511	551	359	1,334	257	342
69	1,337	478	832	8,996	794	1,765	949
70	567	464	500	1,583	389	465	377
71	736	1,530	1,741	1,697	1,284	127	1,099
72	356	248	197	103	66	101	192
73	378	78	123	272	272	406	267
74	322	697	1,089	209	142	105	59
75	1,201	232	1,187	72	87	36	1,484
76	635	829	231	233	369	46	154
78	-	1,098	-	-	-	-	-
79	304	21	663	3	-	118	215
80	913	1,604	-	-	138	381	251
81	1,149	582	764	916	629	946	608
82	175	91	49	53	70	30	28
83	111	386	242	163	153	159	298
84	2,543	1,784	1,603	1,270	714	721	754
85	653	466	475	503	574	459	311
86	-	-	-	-	-	-	86
87	1,761	1,132	1,034	1,464	1,125	931	962
90	4,879	2,505	2,742	2,275	1,977	1,798	1,490
91	15	131	82	394	68	403	226
93	-	-	-	37	109	-	-
94	858	455	1,867	636	2,100	1,023	920
95	-	-	16	396	-	-	196
96	2,276	56	6	11	318	9	11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위 HS 2단위별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자료 중에서 최소 1백만원 이상의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20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음
- 특히 안료(HS 32), 섬유제품(HS 63), 도자제품(HS 69), 기계류(HS 84), 광학·측정·의료기기(HS 90)의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이 높은 편임
  - 그리고 앞서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 17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은 9개임
    - 의료용품(HS 30), 안료(HS 32), 유리(HS 70), 귀금속류(HS 71), 구리(HS 74), 기계류(HS 84), 자동차(HS 87), 광학·측정·의료기기(HS 90), 가구·조명기구(HS 94)는 총관세 감면액과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이 모두 높은 품목군임

<표 II -27> 주요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HS 2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	-	-	69	-	1,897	-	1,114
13	-	4,106	44	-	-	-	-
30	1,950	1,304	1,375	2,158	1,787	5	346
32	2,107	2,260	2,455	2,825	1,219	1,105	1,670
42	0	26	1,094	853	19	898	26
63	112	2,804	1,146	6,082	1,272	1,885	461
68	982	511	551	359	1,334	257	342
69	1,337	478	832	8,996	794	1,765	949
70	567	464	500	1,583	389	465	377
71	736	1,530	1,741	1,697	1,284	127	1,099
74	322	697	1,089	209	142	105	59
75	1,201	232	1,187	72	87	36	1,484
78	-	1,098	-	-	-	-	-
80	913	1,604	-	-	138	381	251
81	1,149	582	764	916	629	946	608
84	2,543	1,784	1,603	1,270	714	721	754
87	1,761	1,132	1,034	1,464	1,125	931	962
90	4,879	2,505	2,742	2,275	1,977	1,798	1,490
94	858	455	1,867	636	2,100	1,023	920
96	2,276	56	6	11	318	9	11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 대상인 연구개발용 물품은 해당 물품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이후 7년간 몇 개의 품목만이 수입되었다거나 그 물품의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매우 소액인 경우도 다수 있음
  -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함
  -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수의 국가(지역)들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FTA를 통해 관세 부담이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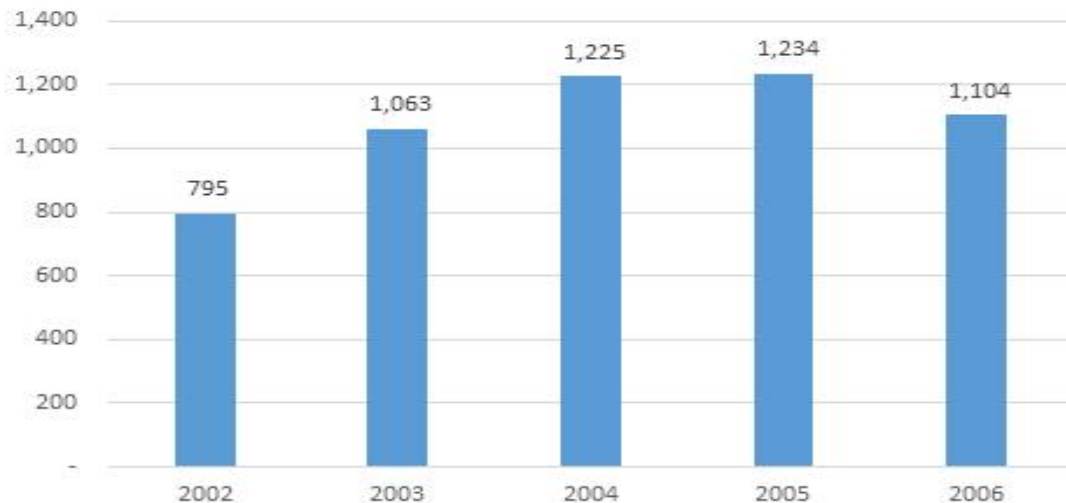
## 나.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 1) 관세 감면 규모

-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는 2002년 약 795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61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02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하였음

[그림 II -6]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02~2006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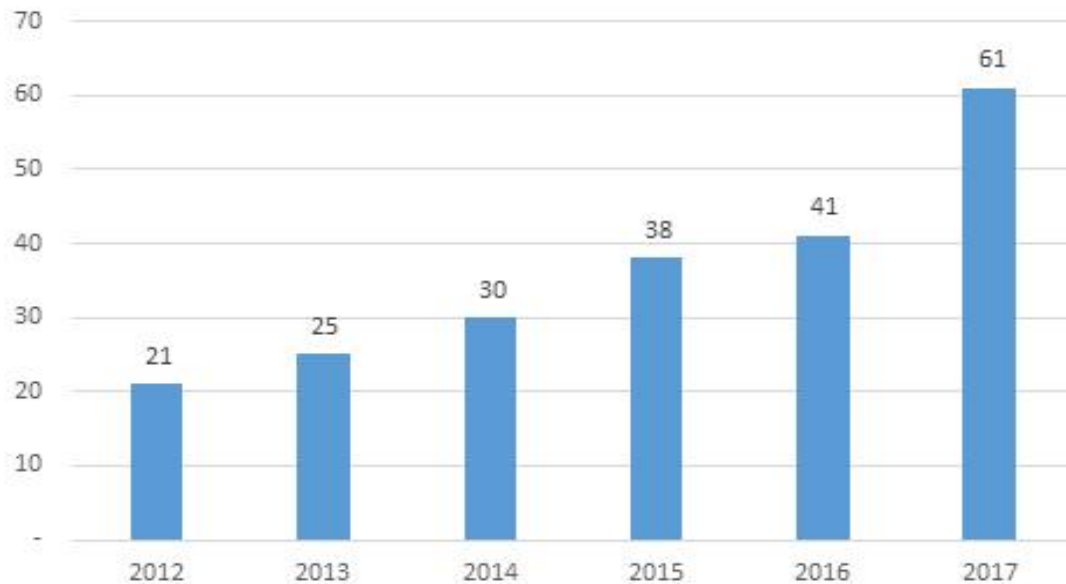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02년의 관세 감면액은 대기업 약 466억원, 중소기업 약 329억원
- 2002~2006년 사이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액 규모와 2012~2017년 사이의 관세 감면액 규모 간 큰 차이가 있음
  - 2012년부터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폐지하면서 관세 감면액이 크게 감소함
  - 이 결과 2003년 이후 약 1천억원을 상회했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은 2012년 이후 100억원 미만으로 크게 감소함

[그림 II -7]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2012~2017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공장자동화용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입액은 전체 교역 수입액 대비 약 2.8% 수준
  - 2017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수입 총액은 약 1,627억원이며,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중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교역 수입액은 약 5.8조원
    -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들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함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수입 총액은 같은 기간 전체 교역 수입 총액 대비 약 2.2%

〈표 II -28〉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교역 수입액	감면 혜택 물품의 수입액	비중
2012	6,283,366	100,861	1.6
2013	6,465,571	95,270	1.5
2014	5,768,618	99,663	1.7
2015	2,769,349	97,388	3.5
2016	2,572,419	105,788	4.1
2017	5,819,810	162,669	2.8
합계	29,679,134	661,638	2.2

주: 전체 교역 수입액은 관세 감면 대상 품목들의 전체 과세가격 수치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관세 감면 품목별 분석

- 2017년 공장자동화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HS 10자리 기준 총 219 개이며, 이들 물품의 관세 감면액은 약 61억원
  - 감면 혜택 물품 수는 연도별 증감이 있으나, 관세 감면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 -29〉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 감면액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감면 받은 물품 수	관세 감면액
2012	259	2,148
2013	197	2,532
2014	207	3,009
2015	182	3,821
2016	139	4,126
2017	219	6,110
합계	-	21,746

주: 감면 혜택 물품 수는 HS 10자리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장자동화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의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800만원 정도임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4억원 수준임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은 2012년에는 4억원에 가까웠는데, 지속적으로 과세가격이 증가하여 2017년에는 7억원을 넘고 있음
  - 연차적으로 과세가격(수입가격)이 비싼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관세 감면액도 2011년에는 8백만원을 약간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2,800만원까지 증가함
  -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된 2015년 이전에는 물품당 관세 감면액이 약 1,3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어섰음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과세가격과 관세 감면액이 비례적이지 않는데, 이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임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을 보면 중견기업이 포함됨으로 인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상계관세로 연결될 수 있어서 대기업을 제외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II -30> 공장자동화 물품당 과세가격 및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연도	과세가격	관세 감면액
2012	389,424	8,295
2013	483,604	12,853
2014	481,464	14,539
2015	535,096	20,993
2016	761,062	29,682
2017	742,779	27,898

주: 물품당 과세가격, 관세액, 관세 감면액은 HS10 자리 기준 물품 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은 대부분 HS 84류의 기계류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고, 이 밖에 HS 85류와 HS 90류에 속한 품목이 있음
  - HS 84류의 기계류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 전체의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 HS 85류의 전자기기 등과 HS 90류의 정밀기기 등의 일부 품목들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받고 수입되고 있음

〈표 II -31〉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4	244	179	191	172	134	211
85	3	6	8	8	2	2
90	12	12	8	2	3	6
합계	259	197	207	182	139	21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 감면액도 HS 84류의 기계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HS 84류의 기계류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HS 84류의 기계류의 관세 감면액은 약 59억원으로 전체 관세 감면액 약 61억원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
  - HS 85류의 전자기기 등과 HS 90류의 정밀기기 등의 관세 감면액은 1억원 내외로 미미함

〈표 II -32〉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백만원)

HS 2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4	2,041	2,357	2,888	3,501	3,987	5,917
85	33	53	90	289	56	127
90	75	122	32	31	83	65
합계	2,149	2,532	3,010	3,821	4,126	6,10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HS2 단위별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은 약 400만~6,400만원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평균 약 1,900만원 수준
  - 평균 약 1,900만원은 2012~2017년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 HS 85류인 전자기기의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은 약 2,600만원으로 세 품목 중 평균 관세 감면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다음으로 기계류(HS 84)의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이 약 1,900만원이었으며, 정밀기기(HS90)의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은 평균 약 1,200만원 수준

<표 II -33> 관세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당 평균 관세 감면액

(단위: 천원)

HS 2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4	8,365	13,166	15,121	20,354	29,755	28,043
85	10,904	8,880	11,215	36,094	27,823	63,648
90	6,222	10,178	3,945	15,509	27,640	10,864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관세 감면의 이론적 논의

#### 가. 관세 감면과 다른 조세 감면과의 차이점

- 관세 감면 제도는 다른 내국세 감면 제도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 관세는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기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 한해 관세가 부과되며, 외국 물품도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적용됨
- 따라서 외국산 물품에 관세 감면이 적용되면 관세 감면 혜택과 함께 관세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관세부과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국내산 물품보다 가격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서 국내산보다는 외국산을 더 선호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내국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물품의 내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조세 감면 혜택만 발생함

- 이 밖에 부가가치세 면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확히 그 규모를 알기가 어렵지만, 이에 반해 관세 감면 규모는 관세부과의 특성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관세는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감면은 국제협약에 의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세 감면품목을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경감세율 적용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세 범위 등은 존재하지 않음
  - 한편 관세 감면에는 조건부 감면세가 존재하지만 부가가치세 감면에는 없음
    - 관세의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할 때 특정한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세의 감면분을 다시 추징하지만, 이와 비교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부 감면세라고 볼 수 있음. 관세에도 무조건부 감면세가 있음
  
- 관세 감면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감면 제도의 문제점과 유사
  - 첫째, 관세수입을 감소시켜 관세의 재정기여도를 저하시킴
  - 둘째,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시켜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음
  - 셋째, 공평과세원칙을 위배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조장시킬 가능성이 있음

## 나. 부분균형 분석<sup>1)</sup>

### 1) 외부효과와 조세지원

- 외부효과의 존재는 조세지원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토대
  -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는 특정한 경제행위로 인하여 대가의 수수나 지불이 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외부효과를 띤 재화의 공급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1) 부분균형분석은 박기백·정재호(2003)에서 인용

개입을 통해 조세부과(조세 감면) 혹은 재정지원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교정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외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외부효과가 작은 부문에 대한 지원보다 커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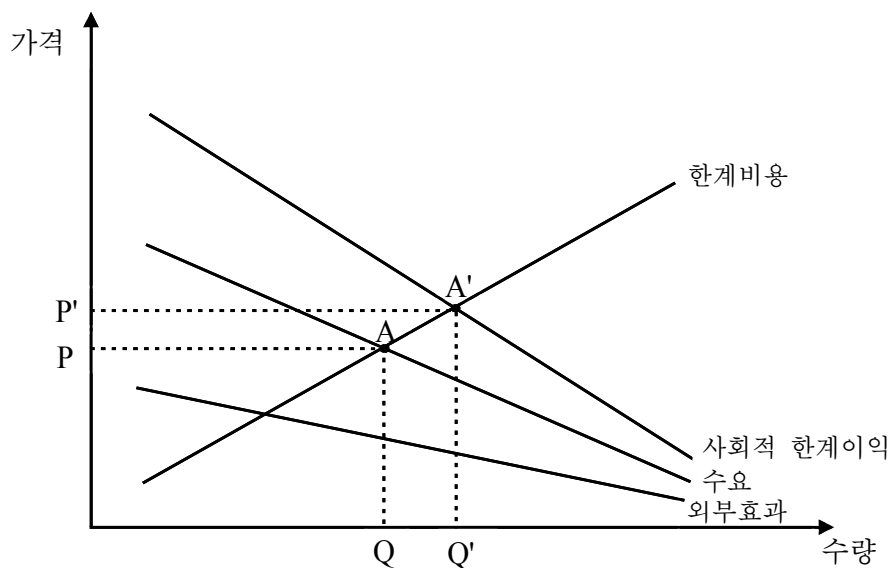
□ 이러한 외부효과 사례는 다수 존재

- 연구개발(R&D)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외부효과가 정부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예로 농업이 국민경제 내에서 농산물의 공급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농촌적 경관보전, 전통문화계승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 연구개발(R&D)처럼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의 자원배분을 생각해보면, 실제 산출(Q)이 사회적 최적 수준(Q')보다 적게 됨

- 즉, 민간기업의 경우 사회적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가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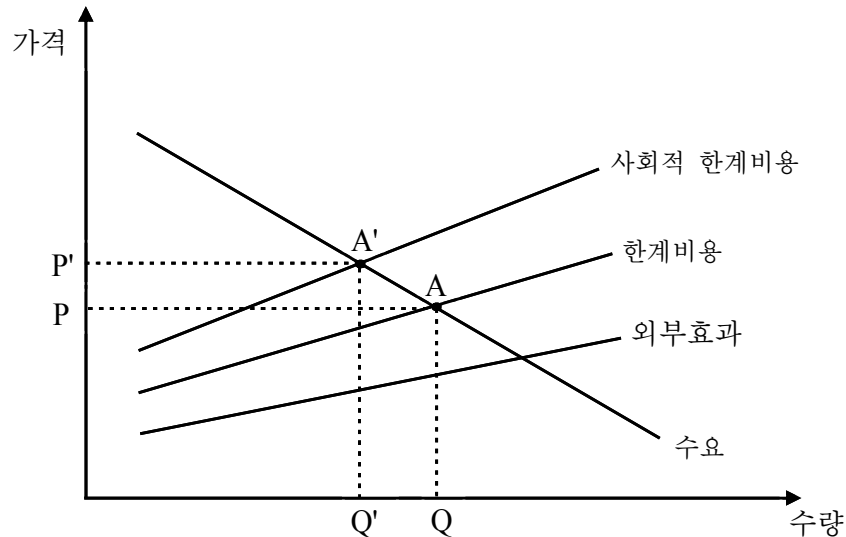
[그림 II -8] 외부 경제의 경우



자료: 저자 작성

- 가격(P)도 사회적으로 부과하여야 할 가격(P')보다 낮게 설정
- 이렇게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후생(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에 있어서 손실 발생
-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이득이 있는 경우와 반대의 현상 발생

[그림 II -9] 외부 불경제의 경우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게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당국에서 과세 혹은 보조금 지원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우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곡선(한계비용)이 단위 세금만큼 위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 최적수준인 A'점과 만날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하면 최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외부효과 해결방식은 피구(Pigou)가 제시한 방안이어서 피구세로 불림
  -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외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외부효과가 작은 부문에 대한 지원보다 커야 됨
  -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효과를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세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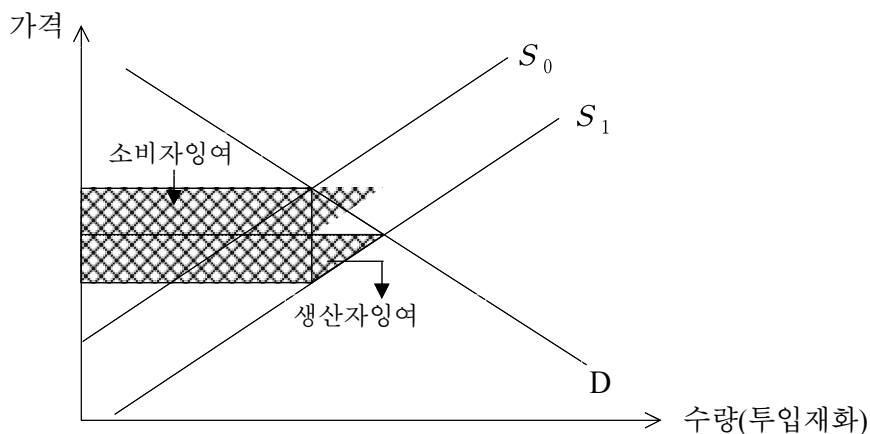
- 외부불경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량 조정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음
  - 만약 부과하는 세금과 보조금액이 동일하다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 다만 보조금의 경우 정부 세수로 충당되므로 조세의 초과부담 문제 등 다소의 차이가 발생함
  
- 외부경제에 대해 조세 감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세금부과와는 정반대로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최적 수준이 되도록 생산량 조절이 이루어짐
  - 조세 감면도 세금부과와 마찬가지로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조세 감면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 그 밖에 외부경제를 교정하기 위해 환경오염 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하여 통제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권리(tradable permits)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연구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차단할 수 있음
  - 정부의 규제에 의한 통제는 시장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권리권 등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외부효과의 시장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권리를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 존재

## 2) 부분균형 분석의 시사점

-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조세 감면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지출이나 산출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혜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조세 감면이 최종적인 소비재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 조세 감면이 있는 경우 최종 소비재 공급자의 비용곡선은 세금 감면만큼 하락하게 되어 공급곡선이 원래의 위치( $S_0$ )에서 아래( $S_1$ )로 이동하게 됨
  -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하고 최종 소비재 판매는 증가하게 됨
  - 따라서 아래 그림의 빗금친 부분만큼 생산자잉여 및 소비자잉여 발생
  
- 이러한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의 상대적 크기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조세 감면 혜택의 상당 부분은 최종 소비재 생산업자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임<sup>2)</sup>
  - 즉, 조세 감면은 소비자에 대해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최종재 생산업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소비자가 향유하는 혜택은 아래 그림에서 네모 모양으로 표시되는 정부의 세수 손실보다 작게 됨
  
- 이러한 분석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 감면에 잘 적용됨
  - 즉, 조세 감면은 농민에 대해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면세유 생산업자와 소비자인 농민이 나누어 가지게 됨
  - 따라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농민의 소득 증대에 있다면 조세(소비세)감면보다 농민에게 직접 지원(직불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 -10]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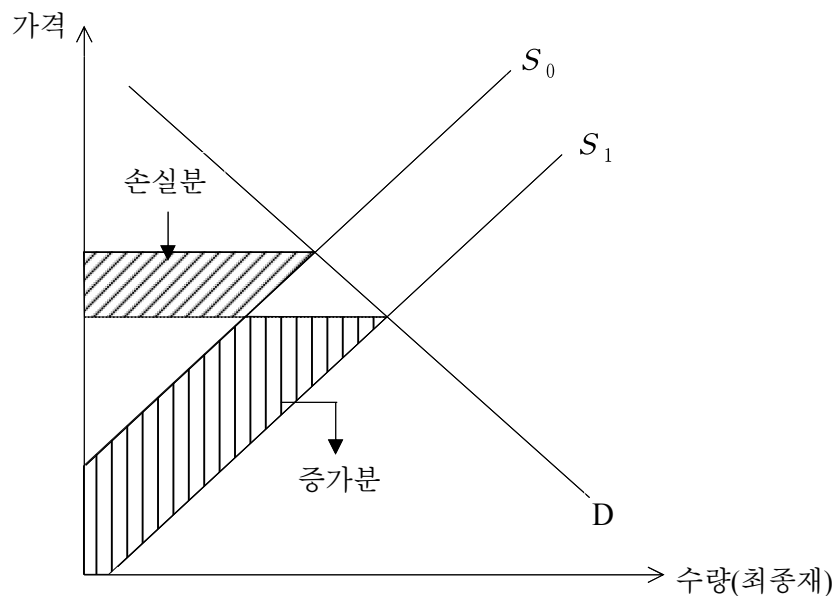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그림은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한 것이지만 만약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이윤극대화가 되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잉여가 더욱 커지게 된다.

- 조세 감면 대상 재화가 최종재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 앞선 분석은 면세된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분석
- 중간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적용하면 중간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크게 2가지 효과가 나타남
  - 첫째는 최종재의 생산비용이 중간재의 가격하락으로 낮아지고,
  - 둘째는 최종재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최종재 가격하락이 발생
- 다음의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은 생산비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증가 효과를 나타내며, 위쪽은 최종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나타나는 손실을 표시한 것

[그림 II -11] 중간재 감면의 최종재에 대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이를 다시 설명하면 중간재의 비용 하락(조세 감면)은 판매액의 변화와 비용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익변화 = 매출(판매액) 변화 + 비용 변화

- 매출(판매액) 변화는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생산증가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전체적인 판매액은 감소하게 됨
  - 반대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판매액은 증가하게 됨
  
- 비용의 변화는 2가지로 구분되며, 앞의 소비자잉여보다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됨
  - 생산비는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되는 부문과
  -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비가 증가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생산비가 감소하는 부문은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잉여와 동일한 크기이지만,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의 소비자잉여보다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됨
  
- 중간재 구매자가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최종재 소비자의 잉여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손실은 중간재의 생산자와 중간재 구매자에게 나누어지게 됨
  
- 따라서 정부가 중간재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 최종 소비자 등으로 누출됨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커짐
  
- 예를 들어 공장자동화 물품이라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하면, 그 혜택은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 공장자동화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공장자동화 물품을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화의 소비자가 됨
  - 즉, 공장자동화 물품 구매자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공장자동화 물품을 생산한 해외 생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
  
- 따라서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 감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혜택의 귀속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4. 주요국의 유사한 관세 감면 제도

### 가. 일본

- 일본의 경우 수입물품에는 「관세법」 및 「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물품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일본도 조세법률주의(「헌법」 제84조)의 원칙에 의해 관세의 경우 항구적 감면세 제도에 대하여는 정률법에 집중적으로 규정
  - 한편 관세는 국가 간 거래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제조약 중에 감면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조약 자체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 이루어짐
  
- 관세의 감면은 제도적으로 보아 크게 둘로 나눔
  - 그 하나는 항구적인 감면환급세 제도로서 정률법 본문에 규정,
  - 다른 하나는 잠정적인 감면환급세 제도로서 잠정법 및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소화46년 법률 129호)에 규정
  
- 일본에서 관세 감면을 실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 및 교육정책 등에 근거한 것이 많고,
  - 그 외에 국제관행에 의함
  - 그 밖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수입촉진 또는 첨단기술 조성 등 국제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음
  
- 일본의 관세 감면은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으로 분류
  - 일본에서는 관세포괄주의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 부과
  - 그러나 국제관례 등 물품의 사용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 감면

- 무조건 감면은 수입할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해 관세 감면이 확정
  - 수입 후의 사정이 변하더라도 추후에 관세징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음
  
- 조건부 감면은 수입할 때에 조건을 붙여 감면
  -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붙여졌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수입 시의 관세 감면효과가 상실되고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
  - 조건부 감면세는 다시 일반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와 제한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로 나뉨
    - 일반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는 수입할 때 일정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하고 면세조건으로 규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수입 시 감면한 관세를 징수
    - 제한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은 수입 시 일정한 조건과 함께 수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세의 수익자에게 특정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부과와 함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1) 「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표 II -34> 일본 「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유형	분야	
무조건 감면세	변질, 손상 등인 경우의 감세(10조 1항)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12조) 협회의 무조건면세(14조 1호~8호, 16호~18호)	
	재수입감면세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감세(11조) 재수입면세(14조 9호~11호, 13호, 14호) 재수입감세(14조의 2)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14조의 3) 내국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대체면세)(19조의 2 제1항)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16조 2항)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만)(16조 2항) 특정 용도 면세(15조)	
	재수출 감면세	재수출면세(17조) 재수출감세(1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13조) 수출물품 제조용원재료 감면세(19조) 경감세율의 적용(20조의 2)	

자료: 관세청, 『일본관세정률법해설』 p. 58을 이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 가) 무조건 감면세

### □ 변질·손상화물의 감세

- 수입화물이 수입허가 시까지 변질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는 그 변질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변질이나 손상 후의 성질에서의 세율에 의거 세액까지 감세

### □ 생활 관련 물자에 대한 감면

- 주식(쌀, 벼, 보리, 밀), 돈육, 설탕, 식료품, 의류품 등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등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물품은 가격의 폭등, 흉작,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감세 또는 면세가 적용
- 그러나 벼, 보리, 대맥, 소맥 등은 이미 무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 협의의 무조건 면세

- 일본 왕이 사용하는 물건, 방일 외국원수 등의 물품, 훈장 및 상패 등, 국제연합 등의 기증물품, 박람회 등의 선전용 자료, 기록문서 등 기타 서류, 국가의 전매품, 상품견본, 수출물품용 레이블, 휴대품, 이사화물, 신체장애자용 물품, 뉴스영화용 필름 등, 소액화물(과세가액 합계액이 1만엔 이하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조건 면세

### □ 재수입감면세

-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된 물품, 재수입면세, 재수입감세 등

### □ 이 밖에 무조건 감면세

-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내국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경우(대체면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 등
  -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에 있는 일본공관에 면세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공관, 직원에 대하여는 이 면세 특권이 주어지지 않음

## 나)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중 자동차, 주류 및 담배만이 이에 속함

### □ 특정 용도 면세

-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허용하는 것
- 공공기관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
- 종교용 물품
-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학교, 박물관, 전시장, 연구소, 시험소 등 시설에서 이용하는 진열용 표본
- 학술연구용품, 교육용 물품 등
- 자선 목적 또는 구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물품
- 항공 또는 항해에 필요한 안전부품 등임

### □ 재수출 감면세

- 재수출 면세는 수입허가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특정한 용도에 사용된 후 다시 재수출되는 화물
  -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화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된 것으로는 단순가공을 한 물건, 시험물, 주문에 필요한 견본
  - 올림픽 또는 국제회의에 사용되는 물품, 전시회에 출품되는 물품, 일시 입국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등
- 재수출 감면은 대차계약 등에 의해 일정 기간 사용된 후 다시 수출되는 것으로 잔여가치에 의해 관세 감면

## 다)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 □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

-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는 수입허가 후 1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

(승인공장)에서 제조가 이루어진 배합사료제조용 옥수수, 수수, 낙화생유 제조용 낙화생 등은 감세 또는 면세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 수입한 지 2년 이내에 이를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감면 혹은 면세해주는 제도

□ 경감세율 적용

- 「정률법」 별표의 세율 중에는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품이 수입 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는 당초부터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징수할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으로 볼 수 없기도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실질면에서 일종의 조건부 감면으로 볼 수 있음

2) 잠정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표 II -35>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임시감면(「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자료: 강성훈,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2016, p. 56 재인용

□ 「관세잠정조치법」의 임시감면

- 무조건 감면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

□ 주요 물품별 관세 감면의 요건

<표 II -36> 일본의 관세 감면·환급 요건

주요 대상 물품	감면·환급 요건
수입허가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 가치감소분에 대한 관세 경감 - 수입신고 시 변질손상 원인 및 정도 입증 및 경감 신청
수입허가 후 보세구역에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변질·손상·멸실된 물품	- 가치감소분에 대한 관세 환급 - 사고발생 직후 세관장에게 신고 - 사고 3개월 이내 신청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1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물품	- 수출가격분에 대한 관세 경감 - 수출 시 가공·수리 및 재수입 사실신고 - 수입신고 시 수출 및 가공수리 사실 입증 및 경감 신청
일본에서 수출한 물품 원상태 재수입	- 관세 전액 면제 - 수입신고 시 수출증명 및 면제 신청
과세가격 5천엔 이하 주문 수집용 견품 박람회 무상제공 기념품·견품 학술연구, 자선예배, 구호 목적 기증품 (과세가격 1만엔 이하)	- 관세 전액 면제 - 수입신고시 용도 증명 및 면제 신청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물품	- 관세 전액 면제 - 수입신고 시 재수출 계획 신고 및 면제 신청 - 수출신고 시 수입사실 증명
수입 후 1년 이내에 원상태 재수출 물품	- 관세 전액 환급 - 수입신고 시 재수출 계획 신고 - 수출신고 시 수입사실 증명 및 환급 신청
수입 후 불량품 등임이 밝혀져 6개월 이내에 재수출/폐기한 물품	- 관세 전액 환급 - 기한 내에 보세구역 반입 - 수출신고 시 위약사실 증명 및 환급 신청

자료: 관세청, 『일본 2013년 통관제도설명』, p. 17, [https://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10&layoutMenuNo=22759&siteId=foreign&searchCtgr=&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currentPageNo=2](https://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10&layoutMenuNo=22759&siteId=foreign&searchCtgr=&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currentPageNo=2)

## 나. 미국

### 1) 관세율의 종류

- 일반 또는 정상무역관계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General duty)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관세율(Special duty)로 구분
  - 일반특혜관세는 수혜국에서 재배, 생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미국으로 운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협정관세는 자유무역협정 조약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세
  - 특정 관세는 특정 물품에 적용하며 그 예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항공기 엔진, 부속품 등이 있음
  - 기타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특별 관세가 존재
  
- 이 외에도 임시법안, 무역 법안에 따른 잠정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음

### 2) 감면 종류

- 미국의 관세 감면은 연방 법률과 미국 품목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음
  - 미국은 「관세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률에 관세와 관련한 법률을 포함시키고 있음<sup>3)</sup>
    - 19장 「U.S.Code Title 19(Customs Duties)」에 관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321조에서 행정상 예외 규정에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명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미국 관세율표 「19 U.S.C 12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HTSUS)」가 있음
      - 제98류(Chapter): 특정 용도 및 조건을 충족하는 재수입물품, 종교, 교육, 과학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등
      - 제99류(Chapter): 한시적 관세 인하와 관련된 물품, FTA에 의한 물품 등

3)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17.

□ 미국의 관세 감면의 종류

- 미국 관세 감면은 재수입 물품, 개인용품, 정부·국제기구·종교·교육 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담보제공 물품, 비상업용 물품 등이 있음

<표 II -37> 미국 특정 요건에 따른 관세 감면 종류

감면 대상		설명
재수입 물품		수출 시와 동일한 상태로 또는 물품가치가 향상되어 재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 관세 감면
컨테이너와 지지대		컨테이너와 물품을 고정하는 지지대 수입 시
개인 용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인물품	외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한 비거주자, 외국에 체류한 거주자가 귀국 시 수입하는 개인물품
	피난민의 개인물품	미국정부에 의해 미국으로 피난온 자가 수입하는 개인물품
	일시 방문자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방문자가 수입하는 물품	미국에 일시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자와 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기타 개인물품	외국에서 미국국민에게 증여되는 물품 또는 외국정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증여되는 물품
정부수입 물품		미국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수입하는 물품		미국 내 외국 대사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수입하는 사무용품, 공문서 등
종교, 교육, 과학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종교, 교육, 과학연구, 문화산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견본품		기준 이하의 술, 담배, 기타 일정 금액 이하의 견본품
전시용 물품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간 전시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미국으로 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일정 대상
차(茶)		미국 수입되는 차 종류 중 HS9에 해당하는 차
미국국적선박의 생산품		미국국적의 선박이 공해, 외국 영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제한금액 내 비상업용 물품		제한금액 내의 비상업용 물품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특정 물품이 HTSUS 9817에 분류
선박의 부품 및 수리용품		선박 부품, 수리용품, 수리용 예비용품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검색일자: 2019. 2. 15)

## 다. 중국

- 중국의 관세 감면은 「해관법」에 따라 법정 감면(제56조), 특정 감면(제57조), 임시 감면(제58조)으로 구분
- 법정 감면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견본 등의 물품, 국제 조직에서 무상으로 증정한 물품, 통관 전 파손된 물품, 관세 감면 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감면을 규정한 물품 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함
  - 특정 감면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 용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건부 또는 정책성의 감면을 말함
  - 임시 감면은 특수 상황이나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의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정함

<표 II -38> 중국의 관세 감면 종류

법정감면	일시적 반입, 반출 물품
	재수입하는 물품
	재수출하는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무상 대체품
	건당 지수세액 50위안 이하 물품
	광고용품
	외국정부 등에서 무상기증 물품
	손상 또는 손실 물품
	선(기)용품, 차량용품
	휴대 반입하는 물품
특정 감면	과학·교육용품 감면세
	장애인용품 감면세
	가공무역 물품 감면세
	보세구역 물품 감면세
	재난구호용 감면세
	구제·자선용 기증물자 감면세
	외국인 투자용 수입설비 감면세
	국내투자용, 차관사업용 수입설비 감면세
집적회로시설 등 감면세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57&natnCd=CN>  
(검색일자: 2019. 2. 19)

- 법정감면은 무조건 감면으로 중국 「해관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감면 대상은 조건부 감면으로 각각의 특별법과 관세청고시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정 감면 중 비영리 목적인 과학·교육 관련 용품과 특정 산업 설비에 관한 감면이 존재
    - 과학·교육용품 감면세는 정해진 과학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과학연구, 교육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것
    - 국내투자용, 차관사업용 수입설비 감면세는 ‘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 속하는 투자사업 중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의 설비 및 부속품과 예비품을 면세해주는 것

## 라. EU

- 유럽관세동맹(European Customs Union)은 1968년 상품의 자유이동 촉진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
  - 1994년, 「유럽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CCC)」이 시행되기 시작
  - 2013년,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사기 방지, 전자통관 환경을 고려한 「신유럽공동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발표
  - 「유럽공동관세법」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의 관세는 없고 역외는 공동관세가 적용
- EU의 관세종류 중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FTA 협정세율, 할당관세, 잠정세율이 있음
  - FTA 협정세율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
  -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잠정세율은 잠정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 Autonomous Suspension(Industrial Suspension): 산업 및 제조업 진흥을 위해 일부 원자재, 반제품 및 구성품의 경우에 한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Airworthiness Suspension: 항공기의 부분품, 부속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수입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EU의 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 1186/2009)은 특정 상황에서의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에 해당하는 교육, 과학, 문화 목적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있음
  - 42조에 의하면 교육, 과학, 문화 목적의 자료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할 수 있음
    - 43조부터 51조는 비상업적인 교육, 과학 목적의 물품의 상세한 조건을 나열하고 있음
  - 53조에 따라 실험실 사용을 위한 동물, 생물학 또는 화학적 물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
  
- EU에서는 우리나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음

#### 마. 호주

- 호주는 「Customs Tariff Act 1995」와 「The A New Tax System Act 1999」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해 관세 면제가 가능
  - 「Customs Tariff Act 1995」에서 교육, 과학, 문화적 목적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이 밖에 실질적 입증가능한 성능상의 이점을 갖는 원재료 및 중간재에 대해 관세 면제를 승인하고 있음
  - 「The A New Tax System Act 1999」에서 규정하는 관세면제 종류는 화폐, 특정 식품 및 음료, 의료기구, 의약품, 외국 정부 물품, 외국군 물품 등임
  
- 호주의 CIT(Certain Inputs to Manufacture)는 성능이 좋은 특정 원료 또는 중간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는 차이가 있음
  - 「호주의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95)」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
  - 자격이 되는 유형은 두 가지이며 ‘화학, 플라스틱 및 종이 제품’(46가지 품목)과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 및 물품’(47가지 품목)임

## 바. 캐나다

- 캐나다 관세청(CBSA)은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 상황(임시수입, 재수입, 재수출 등)하에서 관세 감면, 관세 유예, 관세 환급의 혜택을 제공<sup>4)</sup>
  - 캐나다에서는 재수입, 재수출 등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내에서 제품을 수리하거나 훈련 혹은 시범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유예
  - 캐나다 제품이 수리, 변경, 추가 등을 목적으로 수출되었다 재반입되는 경우 수리, 변경, 추가 전 물품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프로그램(Duties Relief Program)을 운영 중<sup>5)</sup>
  - 관세 감면 신청 가능 기업
    -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
    - 관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관세 감면 신청서(Form K90)를 작성하여 제출
  -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은 수입시점부터 4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 관세청에서 재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감면 물품을 추적 관리해야 하며, 감면 자격 상실 시 보고 및 납세 의무를 가짐

<표 II -39> 관세 감면 신청서(Form K90) 주요 작성 항목

기업 정보	기업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직원 수, 사업 영역, 수입시점에서 수출시점까지의 상품 추적 프로세스 정보 등
물품 정보	수입 물품의 HS코드, 원산지, 관세율 등
추가 공정 정보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 공정 작업 여부, 추가 공정 비율, 추가 공정 작업 내용 등
재수출 정보	수출물품의 목록, 수출 대상 국가 등

자료: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dds-red/relief-report-eng.html>(검색일자: 2019. 5. 24)

4)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ip-pec-eng.html>(검색일자: 2019. 5. 24)

5)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dds-red/relief-report-eng.html>(검색일자: 2019. 5. 24)

- 감면 물품의 양도 및 판매 가능
  - 다만 양수인 혹은 매수자가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 납세 의무는 해당 양수인 혹은 매수자에게 전가됨
  
- 한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이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내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 & ED) Program에 의해 해당 활동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 캐나다 관세청(CBSA)과 「관세법(Customs Tariff Act)」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과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Ⅲ. 타당성 평가





### Ⅲ. 타당성 평가

####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정부의 연구개발행위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외부효과로 인해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가지는 사례 중 연구개발(R&D)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외부효과를 띤 재화의 공급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통해 조세부과(조세 감면) 혹은 재정지원 등을 사용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연구개발의 결과는 긍정적인 정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들도 무임승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최적 상태보다 작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시장 실패를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재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투자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적을 수 있음
    - 연구개발 투자는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상태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나.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 정책대상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음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 내국세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건인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 전담조직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의 조세지원에서는 적격 연구개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세 감면은 이런 문제점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음
  - 내국세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행하는 연구개발하는 활동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조직이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함
  - 반면 관세 감면 제도는 내국세 지원과 달리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격 연구개발비 여부와는 차이가 있음
  - 물론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으로 수입되어 관세도 감면받은 물품이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관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의 사후관리(「관세법」 제102조 제1항)

- 연구개발용 물품 등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할 수 없음
  - 다만 사후관리 대상 중에서 제90조(연구개발용 기자재 포함),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음(「관세법」 제103조 제2항)

**다.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개발에 대해 내국세에서도 조세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정책 대상자는 내국세와 유사하게 형식적인 요건인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임
-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의 조세지원과 관세 감면이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의 조세지원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것이고, 관세 감면은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으로 차이가 있음
  - 내국세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행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제공되지만
  - 관세 감면은 연구개발용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즉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내국세의 조세지원과는 차이가 있어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앞서 살펴본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앞서 살펴본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처럼 외부효과 교정 등과도 관련성이 낮음
  - 이 밖에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예를 들어 자선용품·장애인용품(「관세법」 제90조), 정부용품(「관세법」 제92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관세법」 제96조) 등에 대한 관세 감면세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임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기여
  - 부차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
  
-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생산 및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관세 감면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여 및 부차적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조세 감면 대상 재화가 최종재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에 중간재에 조세 감면을 적용하면 중간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크게 2가지 효과가 나타남
  - 첫째는 최종재의 생산비용이 중간재의 가격하락으로 낮아지고,
  - 둘째는 최종재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최종재의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발생
  
- 정부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손실은 중간재의 생산자와 중간재 구매자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소비자는 가격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됨
  
- 다시 말해 공장자동화 물품이라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하면 그 혜택은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 공장자동화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공장자동화 물품을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화의 소비자가 됨
  - 공장자동화 물품을 구매하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 일부 혜택이 돌아가고
  - 또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생산한 해외 생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 최종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가게 됨
  
- 따라서 정부가 중간재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 최종 소비자 등에게도 돌아가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커짐
  
- 정부가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관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공장자동화 물품을 생산한 해외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하다면, 조세 감면 혜택이 해외 생산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음
  - 특히 관세 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가능성이 있음
  
- 종합해보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시행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관세 감면 제도에 비해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관세 감면으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산업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다만 국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의도와는 달리 조세혜택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대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나. 수혜대상, 수혜내용 등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 2011년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하였지만
  -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관세 감면을 적용 중
  - 2014년 10월부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체가 수입
- 2012년부터 관세 감면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WTO보조금협정에 따라 상계관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 아마도 대기업이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창출 수 있는 대기업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 WTO보조금협정에 의해 특정 기업이 조세지원(관세 감면) 혜택의 거의 대부분을 받고 있다면 특정성을 위반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참고로 WTO보조금협정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정부가 받을 세수입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이런 행위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볼 때 특정한 기업에 한정될 경우(특정성)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있음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관세 감면액이 802억원에 육박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2012년에는 21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음
    - 참고로 앞서도 보았듯이 2004년과 2005년에는 관세 감면액이 1,200억을 상회하기도 하였음

<표 III-1>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액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전망)
관세	802	284	21	27	30	38	41	61	9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향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WTO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함
  - 특정 중견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 중견기업이 주도적인 수출 기업이라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 만약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표에서 보듯이 중견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관세 감면액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견기업에 지원되는 관세 감면 규모를 모니터링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낮추거나 혹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주도적인 특정 중견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함
  
- 그리고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하고 있음
  
-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기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관세 납부 또한 불가피하게 됨
  
-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감경시켜 주기 위해 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라는 정책과 상반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심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관세율 수준을 통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줄이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기려는 것이 정책의도임
  - 특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알고 국내업자가 해당 물품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관세 감면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용 물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후관리를 적용받음
  - 공장자동화 물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수입되어 관세도 감면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관세 감면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의 사후관리(「관세법」 제102조 제1항)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95조)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할 수 없음
    - 다만 사후관리 대상 중에서 제90조(연구개발용 기자재 포함),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음(「관세법」 제103조 제2항)

#### 다.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내국세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으로 인해 조세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없음
  - 재정사업에서도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없음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중복될 수 있음
  - 이처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IV. 효과성 평가





## IV. 효과성 평가

###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가. 분석 개요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평가목적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했는지 검토하는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제도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실험실습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정도(연구개발비)를 비교하는 것이 평가방법의 큰 틀임
  - 여기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했지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함
  
- 다만 연구개발비를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를 대체 변수로 이용함

#### 나. 분석 대상 자료

-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관세청과 국세청의 자료를 연계해 분석함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내역 자료를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은 후, 관세청 자료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국세청을 통해 제공받음
    - 관세청 자료에 포함된 수입내역의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함
  - 본 연구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은 관련 자료의 부재로 다루지 않음
- 관세청 자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제 감면혜택을 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 10자리를 지닌 물품의 수입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경우 그 종류가 많아 실제 감면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관세 비중이 10%보다 큰 물품만을 대상으로 함
    - 여기서 관세 비중이란 HS10단위부호 기준 전체 관세부과액 대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비중을 의미함
  - (예시) 2017년 기준 HS10단위부호가 “9031.80.9080”인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명시한 조건을 만족한 물품만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대상인데, 관세 감면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HS10단위부호 10자리가 “9031.80.908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내역 전체
  - 위의 예시에서 실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9031.80.9080” 물품과 혜택을 받지 못한 “9031.80.9080” 물품이 성능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음
  - 주요 변수: 수리일자, 신고품명, 거래품명, HS10단위부호, 적출국가코드, 원산지국가코드, 과세가격원화금액, 관세율구분코드, 관세율, 관세, 관세 감면분납코드, 관세 감면율, 관세 감면금액, 기업ID 등
- 국세청 자료는 관세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사업자의 기업정보, 과세정보, 세액공제 항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2011~2017년)
- 기업정보: 신고연도, 설립연도, 법인종류, 법인규모, 업태,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부채,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역, 상시근로자 수
  - 과세정보: 수입금액, 당기순이익(손실), 법인세차감전손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세액공제 항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설비투자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의 혜택이 법인사업자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관세청 자료를 결합함
  - 관세청 자료에는 하나의 기업이 한 해에 복수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기업 단위로 한 해 동안 수입내역을 정리함
    - 공장자동화 물품과 비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내역을 구분해 정리함
  - 국세청 자료에서도 하나의 기업이 한 신고연도 안에 복수의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통합·정리함
    - 유량(flow) 변수의 경우(ex. 매출액) 한 신고연도 동안 해당 변수의 합계를 취하고, 저장(stock) 변수의 경우 한 신고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신고서식의 변수를 취함
- (t-1)연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한 경우 t연도의 성과를 측정함
  - 구체적으로 관세청 자료상 수입물품의 수리연도가 (t-1)연도인 경우 국세청 자료상 사업연도가 t일 때 성과를 측정함
  - 수리연도와 사업연도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설명변수 통제가 쉽지 않아 1개연도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함

#### 다. 기초통계 분석

- 관세청 및 국세청에서 협조 받은 자료를 결합해 사업연도가 2011년 이후인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함
- 분석 기간 중 창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 등의 변수의 증감이 지나치게 커 분석에서 제외함
  - 2011년 이후 국세청 법인세 신고횟수가 3회 이하(예: 2012~2014년, 2013~2015년)인 법인은 제외함
  - 이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645건이며, 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순수 법인 숫자는 223개임
    - 해당 관측치 제외 후 총 10,48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표 IV-1> 법인세 신고횟수 4회 이하 법인의 이질성

(단위: %, 개)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법인세 신고 횟수 4회 이하 법인	-7.98 (542)	96.3 (642)	5.8 (420)	17.7 (343)	0.879 (642)
법인세 신고 횟수 5회 이상	-0.06 (8,711)	-0.033 (10,443)	0.483 (8,702)	1.5 (6,990)	0.87 (10,443)

주: 괄호 안은 관측치 수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전체 관측치 10,481건 중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연도 관측치 수는 9,867개이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관측치(법인-연도) 614개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을 받은 관측치 수는 177건임
  - (해석 예시 - 아래 표 참고) 2011년 기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의 물품을 수입한 법인 수는 총 1,652개이며, 이 중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은 총 1,503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총 42개임
  -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관세청 자료에서 ‘관세 감면분납코드’를 통해 파악함
    - 관세 감면분납코드가 A09000010401, A09000010402, A09000010404, A0900001040H, A0900001040S, A09000010420, A09000010422, A09000010423, A09000010424, A09000010426, 또는 A09000010427인 경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그 밖의 관세 감면분납코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로 구분함

<표 IV-2> 연도별 관세 감면/비감면 관측치 수

(단위: 개)

연도	관측치 수	관세 비감면 관측치 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관측치 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관측치 수
2011년	1,652	1,503	107	42
2012년	1,740	1,691	32	17
2013년	1,743	1,571	119	53
2014년	1,740	1,672	51	17
2015년	1,742	1,679	46	17
2016년	1,723	1,619	74	30
2017년	141	132	8	1
전체	10,481	9,867	437	177

주: 연도별 관측치 수는 해당 연도에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숫자이며, 전체 관측치 수는 법인의 연도별 중복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2016년도 기준 자료 내 전체 법인의 평균 업력은 약 18.28년이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의 평균 업력이 가장 큼

<표 IV-3> 2016년 기준 법인 특성별 업력

(단위: 년, 개)

업력	관세 비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전체
평균	17.90	22.07	29.47	18.28
표준편차	12.21	15.89	15.29	12.55
관측치 수	1,619	74	30	1,723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자료에서 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순수 법인의 숫자는 전체 1,743개이며, 이 중 분석 기간 내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법인은 총 1,322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숫자는 총 421개임
  - 분석 기간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법인의 숫자는 114개임

<표 IV-4> 관세 감면 수혜 여부에 따른 법인 분포

(단위: 개)

구분	법인 수
분석 기간 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1,322
분석 기간 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421
분석 기간 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114
자료 내 전체 법인	1,743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각 연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다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연평균 6.94번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은 연평균 42.7번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함
  - 각 연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관세 감면 제도 수혜건수는 연평균 2.34건이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

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건수는 연평균 13.7건임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다른 관세 감면 제도 혜택 비중이 아주 작음(13.7건 vs. 14.7건)
- 참고로 각 연도에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경우 분석 대상 물품을 연평균 1.31번 수입함

<표 IV-5>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수입건수

(단위: 건)

분석 대상 물품의 평균 수입 건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수입건수	관세 감면 제도 혜택 물품 수입건수	전체 수입건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건수	관세 감면 제도 혜택 물품 수입건수	전체 수입건수
2011년	0.369 (1.66)	2.19 (2.72)	3.31 (6.52)	4.83 (15)	5.88 (16.9)	9.93 (26.5)
2012년	0.147 (0.948)	7.53 (28.4)	10.7 (30.1)	2.82 (3.36)	3.53 (4.47)	6.94 (9.84)
2013년	0.6 (2.96)	1.97 (2.07)	3.64 (8.27)	2.32 (3.62)	2.36 (3.72)	4.58 (9.6)
2014년	0.853 (18.5)	2.27 (2.93)	25.1 (149)	44 (140)	44.6 (140)	76.6 (204)
2015년	1.69 (19.2)	1.37 (1.14)	9.28 (38.1)	30.2 (73.3)	30.5 (73.3)	81.7 (252)
2016년	3.13 (79.4)	1.7 (1.12)	2.58 (3.36)	26.2 (60.2)	29.5 (64.7)	136 (389)
2017년	13.9 (147)	1.13 (0.354)	1.13 (0.354)	1 (-)	1 (-)	1 (-)
전체	1.31 (38)	2.34 (7.99)	6.94 (53.3)	13.7 (56)	14.7 (57.1)	42.7 (19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2>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이를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소수의 법인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이 분석 대상 물품을 다수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보다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합계, 평균 관세 합계, 평균 관세 감면 금액 합계가 큼
  - 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건수나 금액 합계 측면 모두 소수의 법인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
  - 참고로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법인의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합계 금액은 45백만원이었으며, 평균 관세 합계 금액은 약 1백만원임

<표 IV-6>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관세, 관세 감면금액 합계

(단위: 백만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과세가격 합계	관세 합계	관세 감면금액 합계	과세가격 합계	관세 합계	관세 감면금액 합계
2011년	313 (677)	4 (11)	16 (40)	2,483 (5,392)	60 (144)	100 (228)
2012년	286 (602)	8 (39)	5 (12)	1,679 (3,536)	44 (102)	37 (58)
2013년	666 (1,620)	6 (16)	19 (48)	2,489 (7,864)	33 (117)	50 (105)
2014년	1,108 (5,522)	62 (438)	12 (63)	6,997 (16,441)	317 (1,145)	88 (262)
2015년	310 (944)	1 (2)	10 (51)	6,038 (14,404)	110 (314)	143 (297)
2016년	263 (486)	2 (4)	9 (24)	9,744 (35,520)	572 (2,763)	91 (218)
2017년	222 (424)	0 (0)	0 (0)	4 (-)	0 (-)	0 (-)
전체	489 (2,134)	11 (150)	13 (43)	4,399 (16,914)	166 (1,198)	80 (197)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2>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정리하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의 물품은 주로 본 제도를 활용하는 소수의 법인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 감면 규모는 해당 물품 수입 시 다른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 규모보다 상당히 큼
  
-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의 규모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상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를 살펴봄
  - 그 결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자산·자본·부채총계가 평균적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확인함
    - 영업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함

〈표 IV-7〉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자산·자본·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2011년	530,577 (3,740,736)	254,330 (1,962,641)	276,246 (1,892,655)	894,057 (5,347,457)	518,286 (3,372,425)	375,771 (2,013,580)	9,914,771 (21,830,458)	6,297,597 (15,819,069)	3,617,175 (6,483,818)
2012년	474,852 (2,855,338)	247,226 (1,771,970)	227,621 (1,266,402)	5,814,268 (14,236,848)	3,595,642 (9,560,041)	2,218,625 (4,918,745)	24,517,364 (38,912,271)	15,400,316 (27,464,365)	9,117,048 (14,398,679)
2013년	494,014 (3,161,638)	257,187 (2,001,646)	236,824 (1,373,141)	1,094,729 (5,963,656)	739,245 (4,301,457)	355,494 (1,756,223)	10,821,079 (27,498,434)	7,093,180 (19,683,416)	3,727,899 (9,486,567)
2014년	560,550 (3,819,180)	293,961 (2,154,993)	266,589 (1,896,171)	2,433,198 (9,834,351)	1,377,340 (6,667,472)	1,055,858 (3,691,887)	28,007,493 (42,610,115)	20,946,875 (34,248,398)	7,060,619 (8,696,142)
2015년	620,313 (4,273,044)	338,711 (2,628,532)	281,601 (1,928,266)	2,161,602 (10,005,619)	1,377,553 (7,341,527)	784,048 (2,860,794)	26,578,776 (44,476,997)	19,207,829 (35,523,648)	7,370,946 (9,654,447)
2016년	545,674 (3,653,444)	309,930 (2,572,771)	235,744 (1,321,109)	2,503,432 (10,233,732)	1,461,397 (7,046,760)	1,042,036 (3,871,226)	19,289,697 (38,770,542)	13,185,509 (28,633,097)	6,104,196 (11,656,063)
2017년	219,455 (688,222)	110,540 (396,678)	108,915 (312,221)	19,550 (23,460)	8,432 (9,797)	11,118 (14,181)	696 (-)	693 (-)	3 (-)
전체	533,869 (3,590,588)	281,841 (2,193,771)	252,027 (1,627,795)	1,878,562 (8,465,466)	1,144,874 (5,820,714)	733,689 (2,954,335)	16,459,836 (33,412,537)	11,188,920 (25,041,022)	5,270,917 (9,837,440)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2>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제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표 IV-8>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2011년	0 (0)	23,495 (239,878)	0 (0)	67,708 (489,440)	0 (0)	642,200 (1,909,340)
2012년	477,922 (2,944,472)	20,763 (220,929)	5,261,560 (12,182,229)	463,810 (1,373,899)	20,879,498 (35,447,439)	1,571,445 (4,543,732)
2013년	483,795 (2,928,998)	18,847 (259,155)	798,940 (4,622,775)	71,705 (531,358)	9,254,737 (24,337,202)	663,847 (2,645,361)
2014년	514,680 (3,100,947)	16,907 (191,547)	1,738,315 (7,299,463)	98,819 (689,558)	22,189,995 (34,038,136)	2,105,444 (3,769,004)
2015년	503,332 (3,037,804)	20,701 (379,610)	1,478,919 (6,615,770)	113,630 (805,723)	21,182,204 (33,845,537)	1,676,340 (3,504,201)
2016년	414,923 (2,416,173)	16,689 (215,010)	1,756,426 (7,102,303)	104,972 (584,692)	14,155,553 (27,368,382)	1,034,869 (2,410,044)
2017년	257,202 (711,702)	9,388 (33,742)	30,067 (42,697)	116 (4,173)	259 (-)	-91 (-)
전체	403,320 (2,653,957)	19,389 (257,168)	1,259,369 (6,093,701)	111,339 (676,684)	11,341,507 (26,186,019)	1,040,719 (2,901,89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2> 참고  
 3. 영업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추정함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라. 실증분석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가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을 상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규모를 이용해 연구개발 활동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함
- 정리하자면 전년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증가율의 변화율을 추정함

- 자료 구성상 2011~2015년에 이루어진 관세 감면 제도 수혜를 받은 법인의 다음 연도 성과를 살펴봄
  -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있는 법인세 신고내역은 사업연도 기준 2012~2016년 자료를 사용함
  - 2017년 국세청 자료상 관측치가 지나치게 작은 관계로 2016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혜 내역을 사용하지 않음

### 1)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비교 분석

- 먼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서 다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을 비교함
  -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으로 구분
  - 이들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비교
  - 전년도 관세 감면 제도 혜택 여부에 따라 해당 변수의 현황을 정리함
- 그 결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의 해당 세액공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 규모가 가장 작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의 증가율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크게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이 크게 나타남
  -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의 증가율은 관측치 수가 크게 줄어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기초통계를 살펴본 결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를 받은 법인의 일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내생성을 통제한 후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초통계 결과는 제도 수혜 여부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므로 아래의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효과성 분석을 시행함

<표 IV-9>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2012년	486 (6,108)	4 (67)	26 (302)	2,275 (15,866)	1 (11)	76 (741)	34,768 (176,033)	380 (1,821)	2,443 (10,915)
2013년	288 (3,636)	20 (427)	33 (507)	10,026 (30,170)	0 (0)	846 (2,878)	79,810 (256,437)	247 (1,020)	7,188 (22,427)
2014년	309 (4,200)	5 (81)	11 (133)	1,429 (10,646)	103 (964)	32 (308)	26,781 (143,448)	939 (3,602)	2,410 (9,660)
2015년	301 (3,277)	48 (867)	9 (94)	1,087 (7,324)	24 (162)	56 (391)	29,152 (67,237)	2,705 (6,769)	7,391 (15,445)
2016년	311 (3,033)	73 (1,349)	76 (1,678)	1,820 (8,368)	193 (832)	120 (664)	26,239 (60,788)	4,355 (11,022)	1,264 (2,352)
전체	336 (4,147)	31 (755)	31 (808)	2,466 (14,692)	63 (637)	134 (1,027)	35,466 (156,771)	1,301 (5,091)	3,422 (12,422)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2>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표 IV-10>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증가율**

(단위: %)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증가율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증가율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증가율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증가율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증가율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증가율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 증가율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액 증가율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액 증가율
2012년	0.717 (319)	-0.211 (4)	0.651 (98)	1.01 (19)	-0.116 (1)	0.207 (7)	1.97 (28)	0.012 (2)	0.669 (15)
2013년	0.515 (393)	-0.456 (7)	0.503 (125)	-0.075 (9)	- (0)	0.516 (3)	0.195 (11)	-0.16 (1)	0.164 (6)
2014년	0.635 (358)	0.085 (6)	-0.202 (111)	-0.108 (17)	0.827 (1)	-0.381 (7)	1.46 (26)	-0.132 (2)	-0.36 (13)
2015년	0.206 (381)	0.393 (16)	0.863 (127)	0.456 (9)	- (0)	-0.656 (3)	-0.263 (13)	-0.147 (2)	0.407 (11)
2016년	0.393 (391)	0.706 (14)	0.104 (119)	0.073 (9)	-0.010 (3)	-0.502 (5)	-0.089 (12)	0.878 (6)	-0.272 (9)
전체	0.483 (1,842)	0.269 (47)	0.39 (580)	0.341 (63)	0.136 (5)	-0.166 (25)	1.01 (90)	0.352 (13)	0.155 (54)

주: 괄호 안은 관측치 수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2) 고정효과 모형 분석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가 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에 미친 영향을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함

$$(1) y_{ijkt} = \beta_0 + \beta_1 \ln(TR_{ijt-1}^{rd}) + X_{ijt}'\gamma + \theta_i + \alpha_j + \eta_k + \lambda_t + \epsilon_{ijt}$$

$$(2) y_{ijkt} = \beta_0 + \beta_1 TC_{ijt-1}^{rd} + X_{ijt}'\gamma + \theta_i + \alpha_j + \eta_k + \lambda_t + \epsilon_{ijt}$$

- $i$ 는 법인,  $j$ 는 지역,  $k$ 는 업종,  $t$ 는 사업연도를 뜻함
  - $y_{ijt}$ 는 재무성과 종속변수,  $TR_{ijt-1}^{rd}$ 은 전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금액 합계,  $TC_{ijt-1}^{rd}$ 은 전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  $X_{ijt}$ 는 관찰가능한 법인특성 변수를 뜻함
  - $\theta_i$ 는 법인  $i$ 의 고정효과,  $\alpha_j$ 는 지역  $j$ 의 고정효과,  $\eta_k$ 는 업종  $k$ 의 고정효과,  $\lambda_t$ 는 사업연도  $t$ 의 고정효과를 뜻함
- 식 (1)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금액의 연도별 합계 금액이 법인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식 (2)는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또는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가 법인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이 모형은 법인, 지역, 사업연도의 고정효과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또는 이로 인한 관세 감면금액 사이의 내생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음
- 김학수·우석진(2017)도 이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본 실증분석에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에 초점을 맞춤
- 식 (1)을 이용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 감면금액의 합계가 커질수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지만,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분석 결과는 세액공제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자체에 대해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성적인 해석도 주의를 요함

〈표 IV-1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 금액 합계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에 미친 영향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	(2)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
로그-관세 감면금액합계 1기 시차	-0.308* (0.084)	0.023 (0.669)
업력	2.225** (0.020)	-0.399** (0.011)
업력제곱	-0.029*** (0.000)	0.003 (0.133)
로그-자산	-4.045 (0.168)	12.018** (0.036)
로그-부채	-1.734 (0.742)	-3.527** (0.025)
상수	130.069 (0.142)	-243.909* (0.062)
표본 수	105	58
R-squared	0.5933	0.7902
연도 고정효과	○	○
업종 고정효과	○	○
지역 고정효과	○	○

주: 1. 괄호 안은 p-value

2. \*\*\* p<0.01, \*\* p<0.05, \* p<0.1

3. R-squared는 within R-squared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분석·정리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석 대상 법인을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으로 확대했을 때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마찬가지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IV-12> 관세 감면 수혜 법인과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에 미친 영향

(단위: %)

	관세 감면 수혜 법인 대상		전체 법인 대상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	(2) 연구개발설비투 자 세액공제액 증가율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	(4) 연구개발설비투 자 세액공제액 증가율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혜 여부_1기 시차	-2.566 (0.256)	0.280 (0.780)	-1.235 (0.731)	0.241 (0.709)
업력	2.072 (0.119)	-0.353 (0.142)	-0.084 (0.963)	-1.357*** (0.001)
업력제공	-0.025*** (0.007)	0.003 (0.155)	0.007 (0.638)	0.005* (0.069)
로그-자산	-7.177 (0.126)	10.010** (0.014)	-3.826 (0.383)	0.447 (0.722)
로그-부채	5.087 (0.151)	-3.237*** (0.007)	1.001 (0.681)	0.641 (0.354)
상수	31.818 (0.647)	-192.499** (0.043)	69.445 (0.424)	-4.484 (0.857)
표본수	191	86	2,726	728
R-squared	0.4381	0.8094	0.0031	0.1740
연도 고정효과	○	○	○	○
업종 고정효과	○	○	○	○
지역 고정효과	○	○	○	○

주: 1. 괄호 안은 p-value

2. \*\*\* p<0.01, \*\* p<0.05, \* p<0.1

3. R-squared는 within R-squared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분석·정리

□ 종합하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하지만 본 제도 수혜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세 감면액의 증가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

□ 단 본 제도의 수혜 법인이 소수이고, 연구개발비 자체가 아닌 세액공제액을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시사점 도출 시 주의를 요함

○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상황이 크게 다르며,  
 자료의 한계상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이와 같은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본 제도의 수혜를 받은 법인 114개 및 법인-연도 관측치 177개는 충분치 않음
  -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수혜 법인 숫자는 이보다 더 적음
-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개발비 자체가 아닌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해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음
-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제도가 수혜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주의를 요함

##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 가. 분석 개요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관세청에서 지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생산력 제고와 품질 향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정성)를 비교하는 것이 평가방법의 큰 틀임
  - 여기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공장자동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했지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함
    -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기업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기업이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성과의 차이가 공장자동화 물품 유무에 따른 차이인지 관세 감면의 혜택 유무에 따른 차이인지 구별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청에서 지정한 공장자동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했지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 나. 분석 대상 자료

-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세청과 국세청의 자료를 연계해 분석함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내역 자료를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은 후, 관세청 자료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국세청을 통해 제공받음
    - 관세청 자료에 포함된 수입내역의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함
  - 본 연구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은 관련 자료의 부재로 다루지 않음
  
- 관세청 자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제 감면혜택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 10자리를 지닌 물품의 수입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시) 2017년 기준 HS10단위부호가 “8441.30.0000”인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4에서 명시한 조건을 만족한 물품만이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인데, 관세 감면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HS10단위부호 10자리가 “8441.30.000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내역 전체를 분석에 이용함
    - 위의 예시에서 실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8441.30.0000” 물품과 혜택을 받지 못한 “8441.30.0000” 물품이 성능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음
  - 주요 변수: 수리일자, 신고품명, 거래품명, HS10단위부호, 적출국가코드, 원산지국가코드, 과세가격원화금액, 관세율구분코드, 관세율, 관세, 관세 감면분납코드, 관세 감면율, 관세 감면금액, 기업ID 등
  
- 국세청 자료는 관세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사업자의 기업정보, 과세정보, 세액공제 항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2011~2017년)
  - 기업정보: 신고연도, 설립연도, 법인종류, 법인규모, 업태,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부채,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역, 상시근로자 수
  - 과세정보: 수입금액, 당기순이익(손실), 법인세차감전손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세액공제 항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설비투자

□ 그 외 자료 구성 방법과 실증분석 방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동일함

#### 다. 기초통계 분석

- HS10단위부호를 기준으로 관세청 및 국세청에서 획득한 자료를 통합해 법인-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을 구축함
  -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사업연도가 2012년 이후인 법인세 신고자료만을 이용함
  - 아래 기초통계를 해석할 때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를 가진 물품의 수입에 한정된 자료임을 유의해야 함
  
- 자료 결합 후 2012년 이후 국세청 법인세 신고횟수가 3회 이하(예: 2012~2014년, 2013~2015년)인 법인은 제외함
  - 국세청 법인세 신고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대부분 창업 초기나 폐업 직전이어서 매출액, 자산총계 등의 변수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 정확한 제도의 효과성 추정이 어려움
  - 이러한 관측치 수는 4,229건이며, 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순수 법인 숫자는 1,925개임
    - 해당 관측치 제외 후 총 75,512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표 IV-13> 법인세 신고횟수 3회 이하 법인의 이질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법인세 신고 횟수 3회 이하 법인	-3.55 (3,820)	-0.311 (4,217)	28.7 (2,290)	45.7 (2,009)	1.32 (4,217)
법인세 신고 횟수 4회 이상	-0.009 (74,517)	0.210 (75,361)	0.446 (60,255)	1.72 (59,578)	2.44 (75,361)

주: 괄호 안의 관측치 수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전체 관측치 75,512건 중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연도 관측치 수는 70,433개이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관측치(법인-연도) 5,079개 중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받은 관측치 수는 429건임

- (해석 예시 - 아래 표 참고) 2012년 기준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의 물품을 수입한 법인 수는 총 14,393개이며, 이 중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은 총 13,529개,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총 98개임
-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관세청 자료에서 ‘관세 감면분납코드’를 통해 파악함
  - 관세 감면분납코드가 ‘A09500010302’ 또는 ‘A09500010301’인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그 밖의 관세 감면분납코드는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로 구분함

<표 IV-14> 연도별 관세 감면/비감면 관측치 수

(단위: 개)

연도	관측치 수	관세 비감면 관측치 수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관측치 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관측치 수
2012년	14,393	13,529	766	98
2013년	15,102	13,869	1,144	89
2014년	15,125	14,364	661	100
2015년	15,128	13,992	1,058	78
2016년	14,938	13,950	924	64
2017년	826	729	97	0
전체	75,512	70,433	4,650	429

주: 연도별 관측치 수는 해당 연도에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숫자이며, 전체 관측치 수는 법인의 연도별 중복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2016년도 기준 자료 내 전체 법인의 평균 업력은 약 15.41년이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의 평균 업력이 가장 큼

<표 IV-15> 2016년 기준 법인 특성별 업력

(단위: 년, 개)

업력	관세 비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전체
평균	15.26	17.43	20.14	15.41
표준편차	10.72	11.11	15.54	10.79
관측치 수	13,950	924	64	14,938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자료에서 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순수 법인의 숫자는 전체 15,135개이며, 이 중 분석 기간 내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법인은 총 11,816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숫자는 총 3,319개임
- 분석 기간 중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법인의 숫자는 369개임

<표 IV-16> 관세 감면 수혜 여부에 따른 법인 분포

(단위: 개)

구분	법인 수
분석 기간 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11,816
분석 기간 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3,319
분석 기간 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369
자료 내 전체 법인	15,135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각 연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다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연평균 21번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은 연평균 2.04번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함
- 각 연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관세 감면 제도 수혜건수는 연평균 4.2건이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건수는 연평균 1.34건임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다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각 연도에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경우 분석 대상 물품을 연평균 1.1번 수입함

<표 IV-17>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수입건수

(단위: 건)

분석 대상 물품의 평균 수입 건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수입건수	관세 감면 제도 혜택 물품 수입건수	전체 수입건수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건수	관세 감면 제도 혜택 물품 수입건수	전체 수입건수
2012년	0.772 (4.41)	3.56 (13.1)	10 (33.2)	1.23 (0.67)	1.24 (0.674)	2.55 (5.76)
2013년	1.16 (8.87)	4.15 (14.1)	18.2 (79.9)	1.36 (0.801)	1.36 (0.801)	1.64 (1.25)
2014년	0.858 (7.25)	5.06 (25.9)	17.8 (95.6)	1.29 (0.729)	1.33 (0.766)	1.71 (1.39)
2015년	1.26 (11.3)	4.03 (15.2)	26.4 (167)	1.41 (0.946)	1.45 (1.01)	2.08 (2.32)
2016년	1.34 (15.6)	4.16 (13.2)	28.5 (155)	1.44 (1.49)	1.45 (1.6)	2.28 (3.76)
2017년	2.9 (16.5)	6.12 (20.7)	33.6 (100)	-	-	-
전체	1.1 (10.3)	4.2 (16.4)	21 (120)	1.34 (0.922)	1.36 (0.97)	2.04 (3.3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16>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이를 통해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HS10단위부호의 물품의 수입내역 대부분에서 관세 감면 혜택이 없으며, 아주 작은 비중의 수입내역에 대해서만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소수의 법인만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소수의 법인에 의해서 분석 대상 물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분만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 각 연도에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해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은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보다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의 합계는 컸으며, 연도별 평균 관세 감면금액 규모는 작게 나타남

- 참고로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법인의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합계 금액은 73백만원이었으며, 평균 관세 합계 금액은 약 4백만원임

<표 IV-18>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관세, 관세 감면금액 합계

(단위: 백만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과세가격 합계	관세 합계	관세 감면금액 합계	과세가격 합계	관세 합계	관세 감면금액 합계
2012년	1,111 (5,673)	47 (364)	28 (193)	1,177 (3,280)	72 (248)	13 (16)
2013년	937 (5,373)	41 (323)	16 (157)	726 (728)	35 (35)	18 (22)
2014년	1,983 (20,031)	118 (1,578)	24 (161)	792 (673)	37 (32)	20 (17)
2015년	1,054 (8,033)	48 (526)	9 (36)	982 (1,052)	36 (40)	32 (28)
2016년	890 (4,670)	38 (284)	8 (26)	1,541 (2,396)	56 (81)	48 (65)
2017년	2,608 (10,448)	62 (275)	59 (511)	-	-	-
전체	1,167 (9,528)	54 (694)	17 (148)	1,012 (1,942)	47 (126)	24 (3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16>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이를 통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이 평균적으로 더 비싼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 감면 혜택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연도별 분석 대상 물품 평균 수입건수는 21건이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연도별 평균 수입건수는 2.04건임

- 하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약 1,167백만원인 반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연도별 평균 과세가격 합계 금액은 약 1,012백만원임
  - 이로부터 평균적으로 한 건의 수입내역당 공장자동화 물품의 과세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평균적으로 한 건의 수입내역당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의 규모는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상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를 살펴봄
  - 그 결과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자산·자본·부채총계가 평균적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확인함
    - 영업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함

〈표 IV-19〉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자산·지분·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2012년	136,780 (1,641,507)	70,025 (940,898)	66,517 (758,947)	887,008 (5,983,691)	516,472 (4,375,585)	370,510 (1,931,109)	25,791 (53,691)	10,679 (20,315)	15,111 (37,771)
2013년	116,986 (1,151,930)	57,805 (693,917)	59,185 (528,174)	889,444 (6,959,159)	532,738 (4,825,913)	356,701 (2,544,592)	14,984 (21,126)	6,921 (13,668)	8,062 (9,742)
2014년	139,806 (1,563,923)	74,667 (1,044,038)	65,139 (606,064)	1,098,730 (8,301,994)	624,369 (5,879,038)	474,362 (3,029,345)	13,786 (18,956)	5,665 (9,806)	8,121 (10,924)
2015년	137,837 (1,474,888)	67,139 (846,124)	70,698 (770,705)	980,794 (7,685,738)	596,568 (5,585,437)	384,226 (2,544,739)	47,884 (149,735)	25,389 (80,948)	22,495 (69,734)
2016년	155,180 (1,834,889)	80,064 (1,088,434)	75,116 (873,256)	979,166 (7,499,955)	598,328 (5,678,191)	380,837 (2,163,117)	67,445 (166,023)	40,238 (101,136)	27,207 (69,948)
2017년	78,308 (299,418)	38,219 (240,747)	40,089 (188,976)	127,073 (294,430)	78,063 (193,104)	49,010 (130,884)	-	-	-
전체	136,749 (1,541,951)	69,651 (929,861)	67,053 (714,068)	941,503 (7,225,111)	561,156 (5,223,473)	380,342 (2,431,816)	30,982 (96,428)	15,825 (54,691)	15,167 (44,934)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16> 참고

자료: 관세청 및 국제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표 IV-20>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2012년	135,201 (1,496,559)	5,364 (117,015)	779,889 (5,889,890)	51,512 (673,994)	23,534 (52,138)	1,283 (2,808)
2013년	116,664 (1,197,205)	2,559 (104,249)	723,848 (5,878,564)	42,631 (610,292)	14,103 (22,015)	553 (2,709)
2014년	126,258 (1,309,647)	4,720 (103,946)	902,883 (6,550,620)	45,176 (627,196)	12,219 (16,820)	458 (1,707)
2015년	108,989 (1,078,108)	4,261 (104,031)	734,780 (5,546,007)	42,350 (624,921)	31,596 (57,318)	2,028 (5,204)
2016년	112,391 (1,163,199)	6,197 (101,476)	741,234 (5,402,802)	32,444 (478,930)	38,792 (57,258)	10,991 (63,317)
2017년	86,760 (281,508)	2,557 (18,725)	118,828 (275,742)	4,016 (16,308)	-	-
전체	119,501 (1,249,777)	4,597 (105,677)	751,851 (5,753,148)	41,562 (597,133)	22,682 (44,149)	2,523 (24,736)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연도별 해당 법인 관측치 수는 <표 IV-16> 참고

3. 영업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함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라. 실증분석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가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sup>6)</sup>

6)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 구성은 김학수·우석진(2017)을 참고함

- 자료 구성상 2012~2015년에 이루어진 관세 감면 제도 수혜를 받은 법인의 다음 연도 성과를 살펴봄
  -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있는 법인세 신고내역은 사업연도 기준 2013~2016년 자료를 사용함
  - 2017년 국세청 자료상 관측치가 지나치게 작은 관계로 2016년 공장자동화 물품 수혜 내역을 사용하지 않음

## 1) 재무성과 분석

### 가) 수익성

-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을 사용함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하지만 세액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했을 때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는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이 가장 작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에도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연평균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세액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했을 때는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수혜를 받은 법인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세액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를 받은 법인의 총자산순이익률이 가장 작음
  - 총자산순이익률의 표준편차의 경우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를 받은 법인이 가장 작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균에 집중되어 있음

<표 IV-21>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연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법인	2013년	-0.281 (13.3)	-2.03 (52.2)	-0.033 (0.398)
	2014년	-0.46 (19.9)	-0.17 (4.83)	-0.044 (0.317)
	2015년	-2.32 (256)	-0.027 (0.911)	0.001 (0.172)
	2016년	3.45 (438)	-0.046 (3.43)	0.048 (0.068)
	전체	0.073 (254)	-0.501 (24.2)	-0.009 (0.277)
세액이 있는 법인	2013년	-0.057 (12)	0.076 (0.201)	0.062 (0.053)
	2014년	0.101 (3.86)	0.095 (0.560)	0.030 (0.205)
	2015년	0.091 (3.07)	0.106 (0.600)	0.052 (0.051)
	2016년	0.085 (1.31)	0.173 (3.7)	0.067 (0.052)
	전체	0.055 (6.55)	0.116 (2.05)	0.053 (0.109)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표 IV-22>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순 이익률	연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법인	2013년	0.040 (0.856)	0.052 (0.166)	0.031 (0.111)
	2014년	0.030 (0.636)	0.050 (0.759)	0.008 (0.116)
	2015년	1.03 (316)	0.052 (0.963)	0.019 (0.138)
	2016년	-0.027 (4.44)	0.028 (0.937)	0.048 (0.071)
	전체	0.277 (161)	0.044 (0.782)	0.026 (0.114)
세액이 있는 법인	2013년	0.097 (0.49)	0.091 (0.111)	0.063 (0.068)
	2014년	0.09 (0.539)	0.114 (0.486)	0.048 (0.051)
	2015년	0.102 (1.59)	0.074 (0.099)	0.057 (0.053)
	2016년	0.079 (0.136)	0.096 (0.662)	0.063 (0.058)
	전체	0.092 (0.88)	0.096 (0.456)	0.058 (0.058)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나) 성장성

-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함
-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이 가장 큼
  - 비정상적으로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큰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했을 때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가장 큼
  - 하지만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보다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매출액증가율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에 집중되어 있음

<표 IV-23>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연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법인	2013년	1.44 (38.6)	0.301 (3.07)	1.12 (8.57)
	2014년	5.41 (371)	0.802 (19.9)	0.313 (1.42)
	2015년	0.358 (8.99)	0.117 (1.21)	0.091 (0.33)
	2016년	0.195 (3.93)	0.123 (1.01)	0.081 (0.196)
	전체	1.83 (186)	0.374 (11.3)	0.42 (4.52)
세액이 있는 법인	2013년	1.47 (44.4)	0.273 (3.23)	0.292 (1.29)
	2014년	5.81 (437)	0.134 (0.76)	0.369 (1.66)
	2015년	0.176 (0.999)	0.067 (0.353)	0.078 (0.213)
	2016년	0.148 (1.45)	0.093 (0.476)	0.1 (0.193)
	전체	1.91 (220)	0.139 (1.58)	0.207 (1.05)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가장 작음
  -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총자산증가율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24>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연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법인	2013년	0.505 (8.64)	0.184 (0.992)	0.11 (0.247)
	2014년	0.468 (9.06)	4.08 (131)	0.067 (0.187)
	2015년	0.424 (20.6)	0.384 (6.66)	0.091 (0.289)
	2016년	0.163 (2.34)	0.12 (0.394)	0.060 (0.147)
	전체	0.39 (12.2)	1.43 (73.9)	0.084 (0.229)
세액이 있는 법인	2013년	0.442 (3.4)	0.17 (0.352)	0.124 (0.239)
	2014년	0.383 (3.55)	0.154 (0.353)	0.091 (0.176)
	2015년	0.498 (24.9)	0.149 (0.581)	0.119 (0.297)
	2016년	0.168 (0.499)	0.152 (0.386)	0.086 (0.151)
	전체	0.374 (12.8)	0.156 (0.411)	0.106 (0.228)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다) 안정성

- 법인의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을 사용함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가장 컸으나, 세액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가장 큼

<표 IV-25> 분석대상 물품을 수입한 법인의 특성·연도별 연평균 부채비율

부채비율	연도	전년도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전체 법인	2013년	0.622 (1.8)	0.489 (0.32)	0.605 (0.238)
	2014년	0.643 (2.35)	0.621 (1.41)	0.645 (0.276)
	2015년	12.8 (1,347)	0.595 (1.72)	0.665 (0.296)
	2016년	-2.2 (345)	0.835 (6.55)	0.528 (0.207)
	전체	3.07 (706)	0.651 (3.7)	0.615 (0.262)
세액이 있는 법인	2013년	0.51 (0.33)	0.441 (0.219)	0.582 (0.217)
	2014년	0.511 (0.373)	0.462 (0.786)	0.595 (0.225)
	2015년	0.494 (0.436)	0.446 (0.223)	0.606 (0.219)
	2016년	0.487 (0.605)	0.444 (0.27)	0.523 (0.205)
	전체	0.501 (0.447)	0.449 (0.483)	0.579 (0.218)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정리

#### 라) 재무성과 분석 결과

-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가 법인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은 전년도에 관세 감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을 받은 법인보다 지표의 연평균 수치가 크지 않았음
  - 매출액증가율의 연평균은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보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컸으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법인보다 작게 나타남
  - 총자산증가율의 연평균은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가장 작음

- 부채비율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가장 작았으나, 세액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했을 때는 반대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통계에 의한 것으로 제도 수혜 여부와 재무성과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므로 아래의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내생성을 통제할 이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 고정효과 모형 분석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가 법인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내생성을 통제할 이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함

$$(3) y_{ijkt} = \beta_0 + \beta_1 \ln(TR_{ijt-1}^f) + X_{ijt}'\gamma + \theta_i + \alpha_j + \eta_k + \lambda_t + \epsilon_{ijt}$$

$$(4) y_{ijkt} = \beta_0 + \beta_1 TC_{ijt-1}^f + X_{ijt}'\gamma + \theta_i + \alpha_j + \eta_k + \lambda_t + \epsilon_{ijt}$$

- $i$ 는 법인,  $j$ 는 지역,  $k$ 는 업종,  $t$ 는 사업연도를 뜻함
- $y_{ijkt}$ 는 재무성과 종속변수,  $TR_{ijt-1}^f$ 은 전년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금액 합계,  $TC_{ijt-1}^f$ 은 전년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  $X_{ijt}$ 는 관찰가능한 법인특성 변수를 뜻함
- $\theta_i$ 는 법인  $i$ 의 고정효과,  $\alpha_j$ 는 지역  $j$ 의 고정효과,  $\eta_k$ 는 업종  $k$ 의 고정효과,  $\lambda_t$ 는 사업연도  $t$ 의 고정효과를 뜻함

□ 식 (3)은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금액의 연도별 합계 금액이 법인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식 (4)는 관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법인 또는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가 법인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앞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서와 같이 이 모형은 법인, 지역, 사업연도의 고정효과와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또는 이로 인한 관세 감면금액 사이의 내생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음
- 식 (3)을 이용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금액의 합계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총자산순이익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관세 감면금액이 1% 증가했을 때 총자산순이익률이 0.01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재무성과 변수에 대해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에 의한 관세 감면 금액 합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IV-26>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 금액 합계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1) 매출액영업이익률	(2) 총자산순이익률	(3) 매출액증가율	(4) 총자산증가율	(5) 부채비율
로그-관세 감면금액합계 1기 시차	0.038 (0.431)	0.016** (0.036)	0.746 (0.523)	0.002 (0.933)	-0.007 (0.372)
업력	0.273** (0.038)	-0.011 (0.694)	-10.013 (0.224)	-0.028 (0.740)	0.060 (0.127)
업력제곱	-0.003* (0.066)	-0.000 (0.668)	0.105 (0.246)	0.002 (0.192)	-0.001 (0.253)
로그-자산	-0.981* (0.067)	0.162** (0.029)	34.349 (0.237)	0.491 (0.104)	-0.450*** (0.000)
로그-부채	0.426* (0.067)	-0.149*** (0.001)	-17.893 (0.216)	-0.119 (0.294)	0.383*** (0.000)
상수	9.488 (0.100)	-0.420 (0.595)	-286.998 (0.290)	-8.867** (0.046)	1.803 (0.105)
표본 수	364	365	362	365	365
R-squared	0.3132	0.5310	0.2476	0.1848	0.7969
연도 고정효과	○	○	○	○	○
업종 고정효과	○	○	○	○	○
지역 고정효과	○	○	○	○	○

주: 1. 괄호 안은 p-value

2. \*\*\* p<0.01, \*\* p<0.05, \* p<0.1

3. R-squared는 within R-squared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분석·정리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포함해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다섯 가지 재무성과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했을 경우에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표 IV-27>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1) 매출액영업이익률	(2) 총자산순이익률	(3) 매출액증가율	(4) 총자산증가율	(5) 부채비율
공장자동화 수혜여부_1기 시차	1.962 (0.901)	-0.043 (0.862)	-0.370 (0.954)	-0.327 (0.994)	-0.087 (0.949)
업력	2.994 (0.350)	-0.109** (0.030)	-1.357 (0.301)	-10.645 (0.218)	0.637** (0.020)
업력제곱	-0.042 (0.216)	0.001 (0.127)	0.016 (0.234)	0.139 (0.127)	-0.003 (0.276)
로그-자산	14.000*** (0.003)	0.774*** (0.000)	-5.670*** (0.004)	7.339 (0.558)	-2.702*** (0.000)
로그-부채	2.818 (0.334)	-0.320*** (0.000)	-0.315 (0.791)	-4.069 (0.595)	1.040*** (0.000)
상수	-418.344*** (0.000)	-9.239*** (0.000)	153.446*** (0.001)	29.784 (0.923)	30.847*** (0.002)
표본 수	3,944	3,963	3,927	3,952	3,963
R-squared	0.0231	0.1033	0.0168	0.0046	0.0457
연도 고정효과	○	○	○	○	○
업종 고정효과	○	○	○	○	○
지역 고정효과	○	○	○	○	○

주: 1. 괄호 안은 p-value

2. \*\*\* p<0.01, \*\* p<0.05, \* p<0.1

3. R-squared는 within R-squared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분석·정리

〈표 IV-28〉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1) 매출액영업이익률	(2) 총자산순이익률	(3) 매출액증가율	(4) 총자산증가율	(5) 부채비율
공장자동화 수혜여부_1기 시차	1.053 (0.945)	1.368 (0.883)	-0.200 (0.986)	-0.472 (0.709)	14.755 (0.692)
업력	7.961** (0.011)	3.686* (0.050)	-1.938 (0.397)	-0.778*** (0.003)	38.900*** (0.000)
업력제곱	-0.058 (0.175)	-0.057** (0.028)	0.057* (0.070)	0.013*** (0.000)	-0.621*** (0.000)
로그-자산	-24.384*** (0.000)	-46.690*** (0.000)	0.838 (0.808)	2.196*** (0.000)	-537.887*** (0.000)
로그-부채	7.143** (0.026)	17.952*** (0.000)	1.245 (0.593)	-0.813*** (0.001)	220.961*** (0.000)
상수	299.603*** (0.002)	635.628*** (0.000)	-38.012 (0.600)	-24.820*** (0.002)	7053.728*** (0.000)
표본 수	58,955	59,365	58,694	59,330	59,365
R-squared	0.0007	0.0067	0.0327	0.0013	0.0522
연도 고정효과	○	○	○	○	○
업종 고정효과	○	○	○	○	○
지역 고정효과	○	○	○	○	○

주: 1. 괄호 안은 p-value

2. \*\*\* p<0.01, \*\* p<0.05, \* p<0.1

3. R-squared는 within R-squared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협조자료를 저자가 분석·정리

□ 종합하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포함해 분석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수혜 여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했을 경우에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수혜 여부는 법인의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다만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재무상황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관측치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 분석의 한계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수입건수, 관세 감면금액, 자산·자본·부채 등 재무상황과 관측치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들 법인 사이의 이질성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V.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V.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 (특례개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 감면 대상 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8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16년 약 170억원에서 2017년에 약 146억원으로 감소
  
-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는 거의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감면 적용 대상 품목 수는 총 951개(HS 10자리 기준)
  - 감면 혜택 물품 수는 2011년 863개에서 2017년 951개로 증가하였으나, 관세 감면액은 2011년 약 268억원에서 2017년 약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연간 최소 20건 이상의 관세 감면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용 물품을 뽑아보면, 11개 품목군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군이 전체 감면 대상 물품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무기화합물(HS 28), 유기화합물(HS 29), 화학공업생산품(HS 38), 플라스틱류(HS 39), 고무류(HS 40), 유리(HS 70), 철강(HS 73),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정밀기기(HS 90) 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감면받은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약 1,500만원 정도(2017년)
  - 관세 감면을 받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임
  - 연차적으로 과세가격(수입가격)이 저렴한 것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세 감면액도 2011년 약 3천만원에서 2017년 약 1,500만원 정도로 감소
  - 관세 감면 실적이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인 물품은 17개 불과
    - 이 중 특히,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일반차량(HS 87), 정밀기기(HS 90) 등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임
  -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다수 존재
    - 2011년 이후 7년간 몇 개의 품목만이 수입되었다거나
    - 물품의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매우 소액인 경우도 다수 있음
  
- (타당성) 정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연구개발 행위와 같이 외부효과를 띤 재화의 공급은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조세 감면)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해 관세 감면 시행
  
- (효과성)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효과는 관세 감면액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 본 제도의 수혜 여부와 수혜에 따른 관세 감면금액이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세 감면액 규모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율을 감소시켰으나, 그 외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수혜 여부와 관세 감면금액이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단 수혜 법인의 숫자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 재무상황이 크게 다르고 자료의 한계상 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결론 도출에 한계가 있음

## 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 (특례개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공장자동화 기계 등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
  - 정책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이며, 2012년 이후 정책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되었으며, 2014년 말에 중견기업이 포함됨
  -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으로 매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50%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제도운영 현황)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05년대 중반에는 약 1,234억원에 이르렀으나, 2012년 대기업이 제외된 이후 2017년에는 약 61억원으로 감소
  - 2012년부터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폐지하면서 관세 감면액이 크게 감소함
- 공장자동화 물품으로 관세 감면을 받고 물품당 관세 감면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800만원 정도임
  - 관세 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의 물품당 과세가격(수입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4억원 수준임
  -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된 2015년 이전에는 물품당 관세 감면액이 약 1,3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어섰음
  -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상계관세로 연결될 수 있어서 대기업을 제외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기계류(HS 84)가 전체의 약 95% 정도이고, 이 밖에 전자 기기(HS 85)와 정밀기기(HS 90)
  - 감면 적용 대상 품목 수는 총 219개(HS 10자리 기준)
  
- (전체 관세 감면)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 관세적용 원칙, 또는 외부경제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에 따라 시행
  - 외교관, 상용건품, 박람회 물품, 올림픽 등의 운동기구, 기증물품 등에 대해 국제적 관례, 국제조약 등에 의한 관세 감면
  - 재수출면세, 재수입면세, 손상감세 등 관세적용 원칙
  - 이 밖에 장애인용품, 정부용품, 이사물품 등
  
- (타당성)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 한정된 정책지원은 타당성이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처럼 외부효과 교정 등과도 관련성이 낮음
  - 이 밖에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한 관세 감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한정해 관세부담을 감경시켜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효과성)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단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 사이에 재무상황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관측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실증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에 한계가 있음

##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조세지원 제도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조세지원 제도 유지가 가능함
- 연구개발용 물품은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기에 감면 신청, 사후관리 등의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이후 7년간 몇 개의 품목만 수입되거나 관세 감면액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다수
  -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감면 신청, 사후관리 등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함
  -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수의 국가(지역)들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FTA를 통해 관세 부담이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FTA세율 대상품목이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확실한 품목이 있을 수 있어 일괄적인 배제보다는 품목별 검토가 필요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관세부담을 감경시켜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집행 가능함
  - 국제적 관례, 관세 적용 원칙, 외부효과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에 따른 타당성은 부족
- 정부가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국내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해외 기업)와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커짐
- 공장자동화 물품을 생산한 해외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하면 조세 감면 혜택이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과 같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하면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해외 기업)와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
  - 관세 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부터 관세 감면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WTO보조금협정에 따라 상계관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 아마도 대기업이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 WTO보조금협정에 의해 특정 기업이 조세지원(관세 감면) 혜택의 거의 대부분을 받고 있다면 특정성을 위반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만약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WTO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지원되는 관세 감면 규모를 모니터링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낮추거나 혹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라는 정책과 상반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심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관세율 수준을 통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줄이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기려는 것이 정책의도임

- 특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혜택이 국내 중소기업 이외에 해외생산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 중견기업의 상계관세 문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성훈,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관세청, 『일본관세정률법해설』, 2012.
- 관세청, 『일본 2013년 통관제도설명』, 2013.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학수·우석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I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
- 박기백·정재호, 『조세 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 12.
-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_\_\_\_\_, 「관세법 시행령」  
\_\_\_\_\_, 「관세법 시행규칙」  
\_\_\_\_\_, 「조세특례제한법」  
\_\_\_\_\_, 「중소기업기본법」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검색일자: 2019. 2. 15)  
\_\_\_\_\_,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 PG0000001057&natnCd=CN>  
(검색일자: 2019. 2. 19)
-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ip-pec-eng.html>(검색일자: 2019. 5. 24)  
\_\_\_\_\_, <https://www.cbsa-asfc.gc.ca/import/ddr-red/relief-report-eng.html>(검색일자: 2019. 5. 24)